

2015년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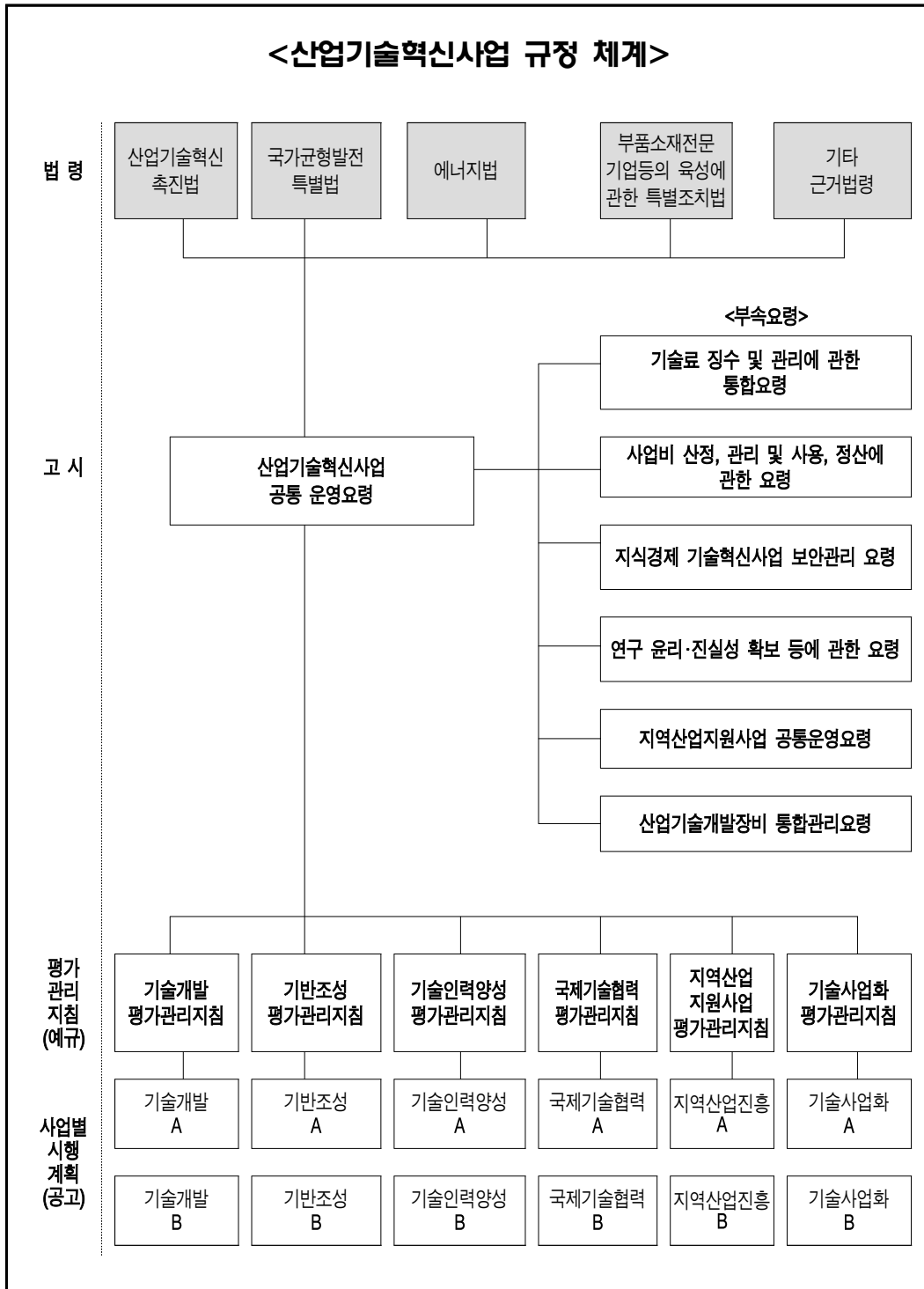
Contents



I.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체계	1
II.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5
III. 부속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77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103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167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215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245
IV. 지 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263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327
V.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393
VI. 법 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399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435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475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489

I.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체계





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목 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적용 범위

- 제28조 협약의 해약
- 제29조 출연금의 지급
- 제30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제31조 수행기관 교육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 제4조 전략기획단
- 제5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 제5조의2 산업 R&D 조정위원회
- 제6조 산업기술혁신평가단
- 제7조 평가위원회 등
- 제8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제9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 제10조 프로그램 디렉터
- 제11조 전담기관
- 제12조 장비전문기관
- 제13조 주관기관
- 제14조 참여기관
- 제15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제32조 사업 결과의 보고
- 제33조 사업 결과의 평가
- 제34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 제35조 성과물의 귀속 등
- 제36조 장비 통합관리 등
- 제37조 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 제37조의2 실시계약의 체결
- 제38조 사업 정보의 관리
- 제39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 제40조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제40조의2 종합성과분석
- 제41조 사업 보안
- 제42조 연구윤리의 확보
- 제43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 제44조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 제16조 산업기술분류체계
- 제17조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 제18조 과제기획
- 제19조 시행계획의 공고

제9장 보칙

- 제45조 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 제46조 포상 등
- 제47조 부속요령의 제정·운영
- 제48조 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영
- 제49조 적용 특례
- 제50조 재검토 기한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 제20조 사업의 신청
- 제21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 제22조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부칙

제5장 사업비의 산정

- 제23조 사업비 계상
-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 제25조 민간부담금

별표/서식

-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제16조 관련)
- [별표 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 제26조 협약의 체결
- 제27조 협약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7호(2014. 12. 1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 12. 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0호
-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71호
- 개정 2010. 5.2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11호
- 개정 2011. 6.10.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96호
-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1호
-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55호
- 개정 2012. 7.12.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0호
- 개정 2012.10.23.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52호
- 개정 2013. 5.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 35호
- 개정 2013. 7.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 77호
- 개정 2014. 4.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76호
- 개정 2014.1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47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9의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한다.

9의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0.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1.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총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 기간을 말한다.
 13.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5.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6.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17.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1.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2.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 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5.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6.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7.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8.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9.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0.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e-Tube”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e-Tube”라 한다)을 말한다.



31.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2.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3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4.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3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3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3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38. “그랜트형 과제”라 함은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39.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0.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 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광역경제권거점기관 지원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 등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 정보화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4.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6. 「전기사업법」, 「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7.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사업
20.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략기획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을 두어 산업기술혁신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1.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
2. 산업기술 R&D 전략 수립 및 기획
3. 산업기술 R&D 투자 방향 및 산업별 R&D 포트폴리오 제시
4. 산업기술 R&D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
5.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대형 R&D 과제 발굴
6. 글로벌 선도 산학연과의 협력 추진
7.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동체계인 전략기획투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③기타 전략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산업 R&D 조정위원회) ①장관은 산업기술 R&D 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산업 R&D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 R&BD 전략 및 신규과제 추진방향
2. 기타 R&D 사업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산업 R&D 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 MD, PD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전략기획단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산업기술혁신평가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시장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별표 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활용하며, 그 외의 전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하에 평가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④평가단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 가. 박사학위 소지자
 -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 라. 기술사 소지자



2. 학계
 -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가. 박사학위 소지자
 -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나. 상호 간 평가자 (“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심의·평가받는 기관은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계열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

⑥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 할 수 있다.



- ⑧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⑨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⑩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⑪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⑫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 (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단,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2. 유희,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투자관리자) ①장관은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기술개발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고 한다.)를 해당산업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M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MD를 지정하는 해당산업, 권한 및 의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프로그램 디렉터)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 관리를 위하여 기술 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1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히, 표준화 및 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특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e-Tube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주관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4. 제2조제1항제33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 「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⑤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참여기관) ①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전담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6조(산업기술분류체계) ①장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 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제17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과제기획) ①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디자인 동향조사(과제별 표준화·디자인 연계 필요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디자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과제기획을 위해 기술분야별 PD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대기업의 주관기관 자격 인정 여부, 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1. 과제의 보안등급(「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이하 “보안관리요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
12.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3.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14. 연구단계(기초, 응용, 개발) 사항
15.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0조(사업의 신청) ①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하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5.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 개발사업

③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평가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과제는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9.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가. 기초연구단계
 - 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수행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
 - 다.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 ④장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 ⑤전담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⑥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보한 날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⑨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②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③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 제23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과제의 수행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장관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장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③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다.

제25조(민간부담금) ①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연도 협약시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동일과제의 수행기관 간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 ④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표를 따른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이라도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⑤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출연금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4항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26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제 공동연구 과제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한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국외 소재 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이하 “연차별 협약”이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이하 “일괄 협약”이라 한다) 하거나,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별 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⑤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독자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법인격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산업기술R&D종합 정보시스템(e-R&D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 ⑧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 연구인력을 총수행기간 및 이후 1년 간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에 의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⑨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7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⑩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 ⑪주관기관의 장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7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4.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5.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6. 과제수행기간 변경
7.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8.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9.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10.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12.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③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통보해야 한다.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의 변경(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3.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상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때, 제3항에 따른 협약 변경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제44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비전문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 제5호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제에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제33조제1항에 의한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6.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4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7. 그밖에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사업비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출연금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⑥그밖에 출연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제3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④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
3. 수행기관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분석업무
4. 기타 사업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1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체결이후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또는 전담기관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2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⑥수행기관의 장 또는 유휴·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를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33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이때, 조기종료(성실수행)는 1차년도 평가 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제32조제3항에 따라 단계 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장관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정된 평가 결과가 “혁신성과”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제34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잔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 잔액은 성과활용, 장비유지 보수 등 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28조에 따라 협약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8. “성실중단” 여부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 출연금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평가 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에 의해 중단된 과제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완료평가 과제 중 ‘성실수행’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평가 등 과거 평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수행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21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때,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⑦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⑩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⑪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9항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32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e-Tube를 통한 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전담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수행기관은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들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5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39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에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형적, 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규정에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2. 공동운영요령,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성과물 양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⑦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 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6조(장비 통합관리 등) ①수행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장비는 원칙적으로 e-Tube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고, 유휴·불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e-Tube를 통해 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수행기관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구매한 장비를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의 모든 구매 장비에 관한 정보를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한 정보를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가 유휴·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장관은 장비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의 회수·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원문,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 징수 과제의 최종보고서는 전담기관 방문 열람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 2.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 3.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공공연구기관
-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제4항 각호의 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 활용 등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의2(실시계약의 체결)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서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특허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⑤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제1항에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 내지 제8항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규정해석등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38조(사업 정보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e-Tube,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장관은 전담기관이 「기술료 통합 요령」 제5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수행기관이 되어야 한다.

③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제3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조기종료”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과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년도 다음해 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장비전문기관은 장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비 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의 2(종합성과분석)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각 전담기관의 성과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각 전담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성과조사·분석 결과의 취합 및 정리
2. 수집된 성과자료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성과분석 업무의 수행
3. 성과조사 및 분석 업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기타 성과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종합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전담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수행기관에게 직접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③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각 전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종합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각 전담기관의 성과활용결과보고서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종합성과분석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종합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사업 보안)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장비전담기관의 소속 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다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4. 민간투자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 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④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⑤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⑥장관은 제1항제8호와 제1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⑪주관기관의 장은 ‘성실중단’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제28조에 따라 과제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성실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성실중단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항에 의한 원인보고서(수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⑬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⑭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 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⑮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 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5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 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장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 등)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유·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혁신 성과’인 과제수행자,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47조(부속요령의 제정·운영)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48조(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영)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장비·시설의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및 기술인력 공급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지역별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9조(적용 특례)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 자치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국외 연구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
2.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 결과에 관한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그랜트형 과제의 경우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08-240호, 2008.12.29>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 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다.

④주관기관 등이 별표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4개 세목(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 그 사용용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과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지침은 2009년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2. 기술이전사업화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3.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
4.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5. 바이오스타프로젝트사업운영요령
6.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운영요령
7.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8. 부품·소재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9.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10.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1.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13.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운영요령
1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15.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16.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
17.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
18.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19.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운영요령
20.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운영요령
21. 전력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22.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운영요령
23.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24.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25.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운영요령



- 26.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 27.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 28.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운영요령
- 29. 청정생산기술보급사업운영요령
- 30. 코리아바이오허브사업운영요령
- 31.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
- 32. 표준기술력향상사업운영요령
- 33.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 34. 해외우수기술인력유치지원사업운영요령
- 35.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부터 34조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1)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처리한 사항은 이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0.5.26)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1. 6.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①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제20조에 의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지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23조에 의한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시 연구장비통합관리 여부를 정하여 제27조에 의한 협약의 체결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협약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 및 단계협약 체결 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2011. 7. 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제3항의 해당연도별 정산 및 제35조제7항의 수행기관별 정산 산정은 시행 1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2. 3. 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협약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 종료시까지 해당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총괄책임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제의 공고 및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하고, 제22조 제3항 제6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1호마목 및 타목 및 제29조제1항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 요령 시행일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의 개정 부분은 이 요령 시행 당시 수행 중인 과제부터 적용하고, 이 요령 시행 전에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5.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7.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5항은 2013년도 신규 공고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4. 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제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2.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4항은 본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의2 제5항 내지 제7항은 본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관한 적용례) 이 요령 시행 당시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한하여 종전 요령 제2조의 정의 조항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본다.

제6조(유효기간) 제26조 제8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14호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제16조 관련)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정밀 생산 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요소 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수치제어장치	100105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프레스 기계	100106		유공압 부품	100406
	사출 기계	100107		액츄에이터	100407
	CAD/CAM 관련 S/W	100108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치공구	100409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100110		금형	100410
자동차 / 철도 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로봇/ 자동화 기계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기타 요소부품	10041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로봇 설계기술	100501
	공조기술	100204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로봇 비전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	100507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산업/ 일반 기계	농업기계	100601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100212		인쇄/섬유기계	100602	
공조기화/냉동기계	100301		식품포장기계	100603	
보일러/로설비	100302		건설/광산기계	100604	
유체기계	100303		일반가공기계	100605	
수처리 설비	100304		방재소방기계	100606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운송하역기계	100607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정보산업장비	100608	
건조/농축 설비	100307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0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100309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IT·SW	1003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2015년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조선/해양 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주조/용접	사형주조	1011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금형주조	101102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특수주조	101103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다이캐스팅	101104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주조/용접재료	101105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Brazing/Soldering	101106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아크용접	101107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조선/해양시스템관련 IT·SW	100709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기술	100710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항공/우주 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소성 가공/분말	단조기술	10120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 시스템	100803		압출기술	1012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인발기술	101203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압연기술	101204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판재성형기술	101205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7		분말제조기술	101206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분말가공기술	101207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100809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나노·마이크로 기계 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표면 처리	열처리기술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도금기술		101302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박막제조기술		101303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용사기술		101304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에칭기술		101305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부/방식기술		101306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침탄/질화기술		101307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IT·SW	100908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금속 재료	구조재료	101001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기능재료	101002	청정 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복합재료	101003		공정개선기술	101402
	재료공정기술	101004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생체재료기술	101007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청정생산 관련 IT·SW	101408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대분류: 전기·전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광응용 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 기기및 전자응 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레이저 가공기	200102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결상기기	200103		조명기기	200603
	광계측·제어기기	200104		소형가전	200604
	광원	200105		백색가전	200605
	광소재	200106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부품	200107		냉·난방기기	200607
	광소자	200108		자동판매기	200608
	기타 광응용기기	200109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열처리장비	200201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 장비	노광·트랙장비	200202	계측 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에칭 장비	200203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폴리싱(CMP)장비	200204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증착장비	200205		환경계측기	200704
	이온주입장비	200206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09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TV수상기	200801
중전 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영상/ 음향 기기	방송수신기	200802
	전력변환기기	200302		3차원 영상기기	200803
	전력용 재료	200303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변압기류	200304		화상통신	200805
	개폐기류	200305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전광판	200807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휴대용 AV기기	200808
	전기료	200308		카 오디오	200809
	전선	200309		방송 AV기기	200810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스피커	200812
	전원장치	200312		마이크로폰	200813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기타 중전기기	200314		전자재료	200901
반도체 소자및 시스템	Si 소자	200401	전자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화합물 소자	200402		응용 및 활용기술(HEV 등)	200903
	MEMS 소자	200403		일차전지	200904
	Sensor용 소자	200404		이차전지	200905
	반도체 재료	200405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SoC	200406		기타 전자	200907
	설계 Tool	200407		LCD	201001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PDP	201002
전기 전자 부품	센서 부품	200501	디스 플레이	FED	201003
	PCB 부품	200502		OLED	201004
	커패시터 부품	200503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자성재료 부품	200504		E-Paper	201006
	기록매체 부품	200505		3D	201007
	복합 부품	200506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USN	RFID기술	300601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모바일-RFID	300603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활용서비스 플랫폼 및 응용SW	300604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System Integration	300803
위성전파	위성통신·방송 전송	300301		Internet SW	300804
	위성통신·방송 단말	300302	디지털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위성항법	300303		가상현실	300902
	탐제체 및 관제	300304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EMI/EMC	300305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전자파기기	300306		게임 및 u-러닝	300905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301001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물리보안	301002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융합보안	3010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정보통신모듈및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위성·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광대역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전달망	300502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가입자망	300503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ITS/텔레매틱스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정밀 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대기/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의약제제	400102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환경설비기술	400503
	농약제제	400104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4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5
	계면활성제	400106		기상장비산업기술	400506
	윤활유	400107		기상서비스산업기술	400507
	첨가제	400108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도로/코팅제	400109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접착제/실란트	400110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유·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환경설비 기술	400605
	감광재료	400112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화장품/소재	400113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섬유 재료	천연섬유
	나노응용기술	400115	합성섬유		400802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바이오·재생 섬유		400803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슈퍼섬유		400804
	개질기술	400202	나노섬유		400805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섬유강화 복합재료		400806
	전기·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섬유가공제		400807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기타 섬유재료 및 부자재		400808
	에너지·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섬유 제조 공정	중합·개질기술	400901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제사·사가공기술	400902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제·편직기술	400903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부직포기술	400904
	나노소재기술	400210		디자인·봉제기술	400905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염색기술	400906
화학 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섬유가공기술	400907
	촉매 응용기술	400302		섬유강화 복합재료 기술	400908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기타 섬유공정기술	400909
	공정설비기술	400304		섬유제조설비	400910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섬유 제품	의류패션제품	401001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생활용 섬유제품	401002
	기타 화학공정	400307		산업용 섬유제품	401003
화학 제품	제지	400401		나노섬유제품	401004
	인조피혁	400402		융합섬유제품	401005
	천연피혁	400403		기타 섬유제품	401006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섬유제품 관련 IT·SW	401007
	기타 화학제품	400405			



〈대분류: 바이오·의료〉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의약 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 기기 및 진단 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401
	항체의약품	500102		방사선치료기	500402
	백신	500103		수술용 치료기기	500403
	균주/효소의약품	500104		수술용 로봇	500404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한방용 치료기기	500405
	세포치료제	500106		기타 치료기기	500406
	유전자치료제	500107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407
	원료의약품	500108		한방용 진단기기	500408
	천연물의약품	500109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409
	약효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110		분자유전진단기기	500410
	시약/진단체	500111		초음파진단기기	500411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X-ray 및 CT	500412
	cGMP 생산기반기술	500113		MRI	500413
	기타 의약바이오 제품/기술	500114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414
	조직치료제	500115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415
산업 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가능 복원/ 보조 및 복지 기기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416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화학촉매기술	500203		임플란트	500502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204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기능성 화장품소재	500205		생체재료	500504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의료용 소재	500505
	바이오환경	500207		재활훈련기기	500506
	바이오매스	500208		이동지원기기	500507
	기타 산업바이오제품/기술	500210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표준화 및 인증기술	500211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융합 바이오	바이오화학공정기술	500212	의료 정보 및 시스템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500301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바이오진단기기	50030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기타 진단기기사재	500306		U-HER(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바이오마커 기반기술	500307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기타 융합바이오 제품/기술	500308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그린 바이오	식물공장 활용기술	500701	
형질전환생물체	500702				
친환경작물보호제	500703				
미생물작물보호제	500704				
기타 그린바이오 제품/기술	500705				



<대분류: 에너지·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온실 가스 처리	CO ₂ 포집기술	600201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600701
	CO ₂ 전환기술	600202		원전 안전평가 기술	600702
	CO ₂ 저장기술	600203		방사선 관리 기술	600703
	non-CO ₂ 처리기술	600204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600704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600205		원전계측·제어기술	600705
자원	자원조사·탐사	600301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600706
	석유·가스 개발	600302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600707
	광물자원 개발	600303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600708
	자원 활용	600304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600709
	광해관리	600305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6007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원탐사/개발/활용	600306		신원전 기술	600711
수화력 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600401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600801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600402		태양광	600802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600403		바이오연료	600803
	발전설비/기기개발	600404		폐기물	600804
	첨단 발전제어 기술	600405		소수력	600805
	가스터빈 기술	600406		풍력	600806
	발전설비 운영 기술	600407		해양	600807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발전	600501		지열	600808
	지능형 전력망-송전	600502		수소	600809
	지능형 전력망-배전	600503		연료전지	600810
	지능형 서비스-시장	600504		석탄가스화/액화	600811
	지능형 서비스-운영	600505		합성연료	600812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600506	에너지 효율 향상	히트펌프 관련기술	600901
	지능형 프로슈머-분산자원	600507		소형 열병합발전 관련기술	600902
	지능형 프로슈머-소비자	600508		고효율 저공해 차량 관련기술	600903
	지능형 프로슈머-운송	600509		전기자동차(PHEV, EV) 관련기술	600904
	공통 기반	600510		수송인프라 관련기술	6009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마트 그리드	600511		부하저감형 건축기술	600906
		건물용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600907	
		건물 통합제어/운용 시스템 관련기술		600908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경영 전략/ 금융/ 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101	유통/ 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7004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102		유통물류응용기술	7004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700103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700403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700104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700404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700105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700405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700106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700406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700107	부가 가치/ 사후 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700501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8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700502
	전자무역서비스	700109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700503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700110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700504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700202		기타보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700505
연구 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700203	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	700601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700204		시각디자인기술	700602
	제품품질 관리기술	700205		디지털디자인기술	700603
	시험/검사/분석기법	700206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4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207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700605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208		서비스디자인기술	700606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700209		공간/환경디자인기술	700607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700210		포장디자인기술	700608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UI/UX디자인기술	700609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700610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기타 디자인기술	700611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대분류: 세라믹>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광전자 소재	유전체소재	800101	나노· 융복합 소재	저차원나노소재	800501
	압전체소재	800102		나노하이브리드소재	800502
	반도성세라믹	800103		나노잉크소재	800503
	자성소재	800104		탄소복합재료	800504
	광/단결정소재	800105		세라믹섬유	800505
	초전도소재	800106		기타나노·융복합소재	800506
	절연소재	800107	생활 세라믹	도자기·타일·벽돌	800601
	센서소재	800108		내화물·단열재·법랑	800602
	기타 광전자소재	800109		시멘트·콘크리트	800603
에너지· 환경 소재	에너지저장소재	800201	유리·유리가공	유리·유리가공	800604
	에너지변환소재	800202		연마·연삭제	800605
	분리기능소재	800203		기타 생활세라믹	800606
	유해성분 제거 기능소재	800204	세라믹 공정 기술	분체 및 원료합성기술	800701
	재활용기능성소재	800205		성형·가공기술	800702
	기타 에너지·환경소재	800206		소성기술	800703
기계· 구조 소재	내열소재	800301		부품 및 패키징 기술	800704
	구조소재	800302	박막 및 코팅기술	800705	
	극한환경소재	800303	평가기술	800706	
	기계가공성소재	800304	기타 세라믹공정기술	800707	
	기타 기계·구조소재	800305			
바이오 소재	조직재생 소재	800401			
	체외진단 소재	800402			
	바이오매스분리공정소재	800403			
	기능성화장품소재기술	800404			
	기타 바이오소재	800405			



〈별표 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1] 일반 기준

- ①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 ② 출연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정부출연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 ③ 동일 과제에서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출연금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 ④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관기관은 귀책이 없고 참여기관이 문제를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 ⑤ 문제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 ⑥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 할 수 있다.



2 사례별 기준

1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 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②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미제출 대상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해당자 5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⑤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 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총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정산대상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 무효화, 양도된 경우 사례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해당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참여제한
○ 투자계약 체결 당시 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회* 회원이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	-	2년
○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기관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1년	-	1년
○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우	-	-	1년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1년	-	-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2년	총수행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2년***
○ 체결된 투자계약이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주관기관·참여 기관 및 그들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 ‘투자기관협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함

**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기관협회 회원이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함

***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함

⑧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름

Ⅲ. 부속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목 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용어 정의

- 제20조 기술료 분쟁·조정
- 제21조 기술료 회계 관리
- 제22조 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 제23조 별도 규정 제정·운영
- 제24조 업무수행경비 지원
- 제25조 재검토 기한

제2장 기술료의 징수

- 제1절 총칙
 - 제4조 기술료 징수대상
- 제2절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제5조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제3절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제6조 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 제7조 기술료 납부수단
 - 제8조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면제
 - 제9조 정액기술료의 징수율
 - 제10조 정액기술료의 징수기간
 - 제11조 정액기술료의 감경
 - 제12조 경상기술료의 징수율
 - 제13조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
 - 제14조 경상기술료의 납부 및 보고
 - 제15조 경상기술료 과제의 미활용 기술의 활용·촉진
 - 제16조 기술료 납부 의무의 승계

부칙

- [별표 1] 기술료 연장, 미납, 기술실시보고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
- [별표 2]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 [서식 1] 기술실시 보고서
- [서식 2]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 [서식 3]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 [서식 4] 매출 미발생 사유서
- [서식 5] 기술료 납부 확인서

제3장 기술료의 관리

- 제17조 비영리 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
- 제18조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관리
- 제19조 제재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 1.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4. 6.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65호
 개정 2005.12.3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25호
 개정 2007. 7. 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84호
 개정 2009. 1.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8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4호
 개정 2012. 7.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63호
 개정 2014. 8.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39호
 개정 2015. 1.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71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정,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기술혁신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축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축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축법」에 따른 산업 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
6.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산축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축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 등
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법」, 「산축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축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등
10.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산축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1.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축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2. 「전기사업법」, 「산축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3. 「에너지법」, 「산축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축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산축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16.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축법」에 따른 대체물질의 개발사업 등
17. 「산축법」 제37조의4 제2항에 따른 사업 등 장관이 기술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소요경비를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 말한다. 단 다른 조항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요령에서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성과물의 사용 또는 사용 허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사용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정액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5. “경상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6. “주관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 “참여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9. “실시기업”이라 함은 제2조 각호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10. “착수기본료”라 함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11.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촉법 제11조제4항의 전담기관 및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란 산촉법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전기사업법 제48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기금은 각 기금의 운영·관리기관으로 한다.
 13. “단계협약”이라 함은 총 기술개발기간을 2년 내지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4. “조사”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 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 조사 등을 말한다.

- 15. “기술실시 보고서”라 함은 이 요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영리 주관기관 및 영리 참여기관이 정부 또는 전담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한 계획을 비롯하여 기술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1절 총칙

제4조(기술료 징수대상) ①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초 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거나, 연구개발결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요령 제19조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제5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①비영리 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공통요령 제37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3.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이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 ④비영리기관은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체 관리할 수 있다.

제3절 영리기관의 기술료

제6조(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①제4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실시계약의 체결은 해당 영리기관이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서식 제1호의 기술실시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음한다. 이때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은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참여기업에 통보하고 기한내 기술실시 보고서를 취합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료 납부수단) ①실시기업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②소멸시효의 도래 기타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면제) ①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 3. 기타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 조사를 통해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담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④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 <별표 1>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⑤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정액기술료의 징수율)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실시기업이 납부하는 정액기술료는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0
-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30
- 3. 대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

②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기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정액기술료의 징수기간) 정액기술료는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정액기술료의 감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의 금액 또는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기완료 과제 중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납부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①경상기술료 방식을 택한 실시기업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착수기본료를 기술료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5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②실시기업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1.25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3.75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5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각 호의 구분은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기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는 제12조의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 징수한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3조(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로 한다.

제14조(경상기술료의 납부 및 보고) ①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부터 기술료 납부 종료시 까지 매 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별지 서식 2호)
3.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별지 서식 3호)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서식 4호)

②정당한 사유없이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기술혁신 산업의 참여제한, 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경상기술료 과제의 미활용 기술의 활용·촉진) ①기술실시 보고서를 제출한 후 3년간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시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 기관 또는 동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사업수행결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도 필요한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③전담기관은 실시기업이 제1항의 기술거래를 통해 발생한 기술료 전액을 기술거래 계약 체결 이후부터 5년 동안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료에 이를 때까지 전담기관에 납부함을 요건으로 거래를 승인하여야 한다.



- 제16조(기술료 납부 의무의 승계)** ①영리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납부 의무의 양도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제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이 해당 과제 종료시점에 납부할 기술료에 대한 납부확약서(별지서식 제5호)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기술료의 관리

제17조(비영리 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 ①비영리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10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100분의 10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나머지 기술료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나머지 기술료의 10퍼센트 이상: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②비영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 재투자 : 100분의 70 이상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또는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기관 운영 경비

③비영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 사용과 기술개발 재투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원 보상 및 기술개발 재투자를 통한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비영리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사용한 회계 연도의 결산 이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2. 기술료 사용명세서 및 증빙서류

⑤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이 기술료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비영리기관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소재한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에 대해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태점검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매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 및 실시기업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 등 현장 확인과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제재조치)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술료 분쟁·조정) ①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기술료 회계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25일 까지 기술료 징수현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기술료 중 현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보 칙

제23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4.6.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전담기관 및 총괄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해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②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예외로 한다.



부 칙 (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전담기관 및 총괄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해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②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예외로 한다.

부 칙 (2007.7.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총괄 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해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②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예외로 한다.

부 칙 (2009.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인 경우의 제15조제1항에 의한 전담 기관 납부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포일(2008.5.27)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장관이 승인한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2조의 공통요령에 의한 사업의 평가관리지침 및 시행계획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③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 중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1.9.5)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인 경우의 제31조 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 납부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포일(2008.5.27)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제5조에 의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및 기술료 징수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단, 장관은 적용 대상사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장관이 승인한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협약된 사업 중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

③이 요령 시행 이전에 협약된 사업은 신규 선정 당시에 협약한 기술료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3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부 칙 (2012.7.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23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제외) 및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3조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시 정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 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징수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2014.8.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제9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 각 개정 부분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시 정한 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경상기술료의 착수기본료가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징수율 및 착수기본료를 우선 적용한다.
②제13조와 제14조의 개정 부분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 요령에 따라 수행 중인 기술료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요령을 따른다.



〈별표 1〉 기술료 연장, 미납, 기술실시보고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제한
기술실시 보고서 미제출	○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산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정액기술료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 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정액기술료 해당 금액	해당자 2년
연장요청	○ 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납부기간 연장	-
	○ 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해당자 1년
기술료미납 /매출위반보고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간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금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2년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산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 경상기술료 납부와 관련하여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해당자 1년
	○ 해당 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 해당 기관에 대한 독촉, 경고 등 공문으로 통보 후 참여제한	경상기술료 납부한도	해당자 1년

※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술료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다.

※ 기술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한 납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기업에 대한 통지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나머지 기술료 진액에 대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호의 사업별로 상기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업신용도 평가지표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업신용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재산조사 결과 및 기업현황조사 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개별 참여 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지 서식 제1호]

기술실시 보고서							
(단위 : 원)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총수행기간		20 . . . ~ 20 . . .		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	20 . . .	
	정부 출연금	구분	정부출연금(A)	정부지분 정산잔액(B)	환수금(C)	비영리기관 사용 정부출연금 (D)	기술료 징수대상 정부출연금 (A-B-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기술실시 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일 자
		번 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2015년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술실시 유형	비영리법인 직접실시		비영리법인 제3자실시		영리법인 직접실시 (성실과제 전문기관 납부)		영리법인 제3자실시					
기술료 총액	원 (감경시 산출근거 제시)											
정액 기술료 납부계획	실시 기업명 (기업구분 : 대, 중, 소) 기술료징수 대상 정부출연금	1차 금액 (년월일)	2차 금액 (년월일)	3차 금액 (년월일)	4차 금액 (년월일)	5차 금액 (년월일)	합계					
경상 기술료 납부계획	실시 기업명 (기업구분 : 대, 중, 소) 기술료징수 대상 정부출연금	착수기본료		매출에 따른 기술료								
		금액(년월일)	시작일 (년월일)	종료일 (년월일)	결산일	기술료율						
					()월	매출액의 ()%						
					()월	매출액의 ()%						
기타 특이사항	1. 실시기업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및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상가에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와 본 과제를 활용하여 매출 발생 및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상기술료를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매출이 미발생시에는 매출 미발생 사유서를 포함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본 과제에서 발생한 실시계약 체결 또는 본 사업을 활용한 매출이 발생한 후, 기술료 미납, 경상기술료 보고서 미제출, 매출 허위보고 등이 발견될 시에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6조(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기관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별지 서식 제2호]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년도 : 201_년)

제품명/상품명/용역 등	매출액 (천원)	세부사양 ^{주1}
1.		
2.		
3.		
4.		
5.		
6.		
7.		
8.		
9.		
10.		
총계		

주 1 : 세부사양에 관한 관련자료 첨부 가능

※ 작성 공간부족 시 본 양식에 추가작성 가능



[별지 서식 제3호]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년도 : 201_년)

(단위 : 원)

구분	품목명 또는 용역명	총매출액 (A)	매출에누리 및 환입, 매출할인 (B)	사업수행 결과물의 기여율 (C)	순매출액 (D=(A-B)*C)	기술료 (F=D*기술료율)
제품						
상품						
용역						
계						

※ 기재상 주의

-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서식 제4호]

매출 미발생 사유서

1. 대상과제명(과제번호) :
2.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3. 관련 기술 활용 현황
4. 매출미발생 사유 (자세히 기술요망)
5. 향후계획



[별지 서식 제5호]

기술료 납부 약속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총수행기간			
기술료 납부 대상기관	기관명(대표자)		
사용한 정부출연금(원)		납부예정 기술료(원)	

상기 기술료 납부 대상기관은 기관 변경 승인 조건으로 기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본 약속서상 납부예정 기술료 금액은 장래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기술료 금액은 해당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최종 확정하는 시점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금액이 되는 점에 동의합니다.

별첨: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 납부 대상 기관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인감)

○○○○○○○○ 귀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목 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사업비 산정

- 제4조 사업비 산정기준
- 제5조 직접비 산정
- 제6조 간접비 산정
- 제7조 사업비의 조정

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 제8조 출연금 지급
- 제9조 사업비 관리기준
- 제10조 사업비 사용기준
- 제11조 직접비 사용
- 제12조 간접비 사용
- 제13조 사업비 이월 기준
- 제14조 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 제15조 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제4장 사업비 정산

- 제16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 제17조 사업비 정산기준
- 제18조 직접비 정산
- 제19조 간접비 정산

제5장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 제20조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 제21조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 제22조 적용특례

제6장 행정사항

- 제23조 재검토기한

부칙

별표/서식

- [별표 1]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제4조 1항 관련)
-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제4조 1항 관련)
-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제17조 5항 관련)
-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제18조 1항 관련)
- [서식 1]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서식 2]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서식 3] 사업비 청구서
- [서식 4]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협약서(총괄표)
- [서식 5]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서식 6]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 [서식 7] 자체 정산 결과 보고서
- [서식 8]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 [서식 9]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내역 확인서
- [서식 10]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 [서식 11] 이월 승인 요청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 12.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2호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72호
개정	2011. 6.10.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97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2호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56호
개정	2012. 7.12.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1호
개정	2012.10.23.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53호
개정	2013. 7.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 78호
개정	2014. 4.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77호
개정	2014.1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48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비목”이라 함은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3. “세목”이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분류된 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통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5.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현물”이라 함은 민간부담금 중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참여율”이라 함은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8. “사업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 또는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9.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장관이 별도 지정한 장비전문기관이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e-Tube”란 장비전문기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사업비카드”라 함은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전담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구비카드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말한다.
12.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사업비 집행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이월금”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기타 이 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연도 사업비를 말한다.
14.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15. “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6. “연차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7. “일괄정산”이라 함은 협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8. “단계정산”이라 함은 단계협약 과제에 대하여 해당기간 또는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9.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20. “집행잔액”이라 함은 연차별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21. “정산금”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2. “전담연구인력”이라 함은 대학에 소속된 자(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한다.
 23.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 ②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관계법령 등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 특성에 따라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사업비 산정

제4조(사업비 산정기준) ①사업비는 별표 제2호부터 제3호에 따라 과제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1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외국소재기관인 경우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사업비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하며, 현물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④사업비는 수행기관 별로 각각의 사업비 소요내역을 산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각 수행기관이 산정한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비 산정) ①직접비의 세목 및 각 세목별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장비 및 연구시설 : 구입가의 20% 이내.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로 산정 가능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수행기관이 생산·판매중인 장비, 연구시설,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의 생산·판매 원가
5.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 이내 또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③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합쳐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한다.(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4.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 연구원의 참여율



④인건비의 현금 또는 현물 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물 산정기준, 단 제5항 각호의 경우 현금 산정 가능
 - 가.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다. 제3항4호의 참여연구원
2. 현금 산정기준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 대학의 전담연구인력 및 학생연구원
 - 다.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 1)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2) 프리랜서인 경우 :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라.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참여연구원
 - 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
 - 사. 제5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아. 그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⑤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는 차년도 협약부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 1호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다.
3.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1호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5.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7.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8.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9.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 ⑥제5항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산정은 협약형태에 상관없이 과제종료 시점까지 가능하다.
- ⑦해당과제로 구입한 장비 등은 총 수행기간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장비 구입시 수행기관 내 공동활용이 가능한 공동활용장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구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⑧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간접비 산정) ①간접비의 세목 및 각 세목별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제7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 ③영리기관의 간접비는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등을 반영하여 간접비율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조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출연금 지원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3. 선정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8조(출연금 지급) ①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한다.

1. 사업비 청구서(서식 제3호), 통장사본(참여기관별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포함
2. 현물 출자 협약서(서식 제4호)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출연금을 현금 또는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형태로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일괄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의 경우 : 2차년도 이후에는 연차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2. RCMS 적용 사업의 경우 : 사용 건별로 RCMS 운영기관의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지급
3. 협약상 사업 수행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사업의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가능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에게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①수행기관의 장은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 집행 전 반드시 사업비 계좌, 사업비카드 및 법인카드를 반드시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을 신규 개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RCMS 적용 사업은 사업비 사용내역 입력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비종합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은 사업비 집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업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관리한다.

⑤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총 사업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사용기준) ①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책임자 발의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부득이한 협약 지연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요령 제27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사용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⑤수행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이때 총괄과제 내에



다수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
 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
 3. 수행기관 상호간 사업비 현금 거래. 다만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⑥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직접비 사용) ①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 한다.

②직접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최초 협약예산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2.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증액하는 경우
3.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 발생시
 - 가. 원래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 구매
 - 나. 원래 사업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구매
 - 다. 원래 사업계획상 예정된 구매의 철회 또는 취소

③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해당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⑦최종연도에 구입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이하 “장비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⑨그밖에 직접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호 및 4호를 따른다.

제12조(간접비 사용) ①간접비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②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③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 ④그밖에 간접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호 및 4호를 따른다.

제13조(사업비 이월 기준) ①해당연도 사업비 현금 잔액을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월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국외주문물품의 배달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 과제의 연차별 사업비 잔액은 차년도 수행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단 연차보고서 제출시 이월내역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2.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에 물품,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에 사용가능
3.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미지급한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현물은 이월할 수 없다.

④이월금은 동일 세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구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재이월 할 수 있다.

⑥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과제의 이월 승인 사업비는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연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14조(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①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를 해당 과제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자는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사용하되, 비영리연구기관은 적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초·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자원 조성
2.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의 관리
4. 과제수행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용도

③협약기간 종료후 발생한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
2. 제9조제1항에 의거 과제별 계정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연구기관

④RCMS를 적용받는 과제는 본 조항을 적용치 아니한다.

제15조(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①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은 이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익금은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정산

제1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서식 제5호)를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의 경우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며, 제출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주관기관이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서식 제7호)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평가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받은 경우
2.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증한 연구관리 우수기관인 경우(인증기간 내에 한함)
3. 국외소재기관인 경우
4. 그랜트형 과제인 경우

④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여야 하며, RCMS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증빙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⑤제4항에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연구과제추진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⑥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자체 정산을 실시한 후 주관기관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서식 제9호)를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행기관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업비 변경 내역을 포함한 집행내역을 모두 등록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입력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비목별 사용내역 및 제출서류 등을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친 사업비관리시스템 내역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RCMS 적용 사업에 한해서 주관기관의 전자서명을 통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 ⑧사업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변경내역(서식 제9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⑨“성실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추가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정산기준) ①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하며, 사업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사업비 정산범위는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확인서로 정산을 갈음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다.
- ④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의 경우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사업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금액은 불인정하며, 그 구체적 예시 기준은 별표 제4호와 같다.
- ⑥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수행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과제 종료 후 사용한 학생인건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 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사용 잔액을 회수한다.
- ⑦ “혁신성과”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비 잔액을 회수 하지 않을 수 있다.
- ⑧정산 또는 회수가 면제된 경우에도, 사업비를 유용하였거나 이 요령에 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불인정하고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직접비 정산) ①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제5호를 따르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③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집행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간접비 정산)** ①간접비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로 한다.
- ②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 제20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반납내역(서식 제10호)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③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과제의 정산대상기간(일괄협약기간, 단계협약기간, 연차협약기간) 동안의 출연금을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은 해당 수행기관이 지급받은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④RCMS 적용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계좌의 잔액에서 정산금을 우선 반납 할 수 있으며, 그 후속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계좌에 지급
 2.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작을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부족분을 통보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통보
- ⑤제9조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을 제외한 수행기관은 사업비 관리계좌를 최종연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해지하여야 한다.
- ⑥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결과를 통보한 날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⑦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 ⑧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정산금 및 정산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포함), 정산지연여부(지연시 사유와 대책 포함)를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⑨장관은 해당금액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국고 납입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⑩전담기관의 장이 제9항 등에 정산업무 처리기한은 수행기관의 정산금 납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 ⑪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⑫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업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 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 지시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①수행기관이 제2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공통운영요령 제45조의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에 따른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하거나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 및 환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는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의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의 징수 기간을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적용특례)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 12. 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1. 6.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1. 7. 5)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31조제3항의 해당연도별 정산 및 제35조제7항의 수행기관별 정산 산정은 시행 1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법정부담금 및 제5조제6항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2. 3. 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제6항은 시행 1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7항,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11조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11항, 제17조제8항, 제2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3. 7.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4. 4. 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8항5호의 개정 사항은 본 지침 고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사업비의 산정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제2호, 제3호, 제5조 제8항, 제18조제1항에 따른 별표 제5호의 개정 부분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이 요령 시행 이후 도래하는 차년도 사업비 산정 및 집행시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2.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사업비의 산정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제5조 제5항, 제6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별표 4호의 개정 부분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이 요령 시행 이후 도래하는 차년도 사업비 산정 및 집행시점)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별표 제2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별표 제3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별표 제5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서식 제1호.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서식 제2호.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서식 제3호. 사업비 청구서

서식 제4호.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 출자 협약서

서식 제5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서식 제6호.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외기관)

서식 제7호.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서식 제8호. 수행기관 현물 출자 확인서



서식 제9호.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 내역 확인서

서식 제10호. 사업비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서식 제11호. 이월승인요청서

※ 표준서식은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제1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유통물류응용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전자무역서비스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디자인	기타보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제품디자인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시각디자인기술	
	제품품질 관리기술		디지털디자인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서비스디자인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공간/환경디자인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포장디자인기술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UI/UX디자인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기타 디자인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계·소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디지털방송
	자동차/철도차량	안전도 향상기술		디지털 방송 콘텐츠	
		차량 지능화 기술		광역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홈네트워크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IT·S/W		RFID/USN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서버기술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소프트웨어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SW 솔루션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		System Integration	
		산업/일반기계 S/W		Internet SW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IT·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가상현실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IT·S/W	콘텐츠 창작 기획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소성가공/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게임 및 u-러닝	
청정생산		청정생산 관련 IT·SW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oC		물리보안	
		설계 Tool	융합보안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ITS/텔레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첨유제품		첨유제품 관련 IT·SW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바이오·의료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공정기술	에너지·자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전력망-발전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지능형 전력망-배전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지능형 서비스-시장
		의료정보표준화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지능형 프로슈머-분산자원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노심해석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원전 안전평가 기술				
원자력	신원전 기술				



【별표 제2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제4조 1항 관련)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를 결정 					
	계상/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총당금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 분</th> <th>세부 산정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수행기관에 소속된 자</td> <td>○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td> </tr> <tr> <td>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td> <td>○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td> </tr> </tbody> </table> <p>※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세목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제5조제4항 제2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사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수행기관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학연협동으로 석사·박사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학생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80%;">세부 산정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생 연구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후과정 : 3,000천원(단, 해당금액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규정에 따름)×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후과정 : 3,000천원(단, 해당금액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규정에 따름)×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후과정 : 3,000천원(단, 해당금액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규정에 따름)×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세목	구분	내용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사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제의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장비·시약·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장비·시약·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 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세목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사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숙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체재비
	연구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계상/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제16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세목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계상하여야 함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로, 원고료 등은 협약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 ○ 창의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십,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세목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간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등) 집행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p>○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p> <p>○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p>○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p> <p>○ 해외 체재비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해외체재비=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가 또는 실소요금액) X 참여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비, 식비는 포함하지 않음 - 참여 연구원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세목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한다. ○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수당	사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함)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위탁한 사업 ○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초협약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사업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 : 실집행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하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평가결과</th> <th>연구수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연차 또는 단계평가</td> <td>중단(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td> <td>협약금액에서 50% 감액</td> </tr> <tr> <td>중단(불성실)</td> <td>미지급</td> </tr> <tr> <td rowspan="2">최종평가</td> <td>성실수행(60~70점)</td> <td>협약 금액에서 50% 감액</td> </tr> <tr> <td>불성실수행(60점 미만)</td> <td>미지급</td> </tr> </tbody> </table>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연차 또는 단계평가	중단(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협약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미지급	최종평가	성실수행(60~70점)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60점 미만)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연차 또는 단계평가	중단(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협약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미지급												
최종평가	성실수행(60~70점)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60점 미만)	미지급												



【별표 제3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제4조 1항 관련)

세목	산정 원칙
간접비	<p style="text-align: center;">사용 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연구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공동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동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유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유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유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유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세목	산정 원칙
계상/산정 기준	<p>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한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지원인력(행정인력 및 연구지원전문가 포함)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함.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제17조 5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재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해당 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05 913 584 969">계약 등 지출원인행위</th> <th data-bbox="584 913 802 969">입고 또는 이행 완료</th> <th data-bbox="802 913 1050 969">사업비 지출</th> <th data-bbox="1050 913 1289 969">인정·불인정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05 969 584 1126" rowspan="2">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td> <td data-bbox="584 969 802 1032">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td> <td data-bbox="802 969 1050 1032">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td> <td data-bbox="1050 969 1289 1032">인정</td> </tr> <tr> <td data-bbox="584 1032 802 1126">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td> <td data-bbox="802 1032 1050 1126">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td> <td data-bbox="1050 1032 1289 1126">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td> </tr> <tr> <td data-bbox="405 1126 584 1283" rowspan="2">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td> <td data-bbox="584 1126 802 1189">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td> <td data-bbox="802 1126 1050 1189">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td> <td data-bbox="1050 1126 1289 1189">불인정</td> </tr> <tr> <td data-bbox="584 1189 802 1283">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td> <td data-bbox="802 1189 1050 1283">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td> <td data-bbox="1050 1189 1289 1283">불인정 (이월 승인받아야 집행가능)</td> </tr> </tbody> </table>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인정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불인정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불인정 (이월 승인받아야 집행가능)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인정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불인정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불인정 (이월 승인받아야 집행가능)															
	- 위 표에서 '사업비 지출' 항목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중 '불인정' 항목의 경우 타당성(소요비용, 제작기간 등)이 인정되어 협약시 사업계획서 내(연구개발 내용과 사업비 세부내역)에 계약금/중도금을 명시한 연구시설·장비, 시제품·시제품에 한하여는 예외로 함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바.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구분	주요내용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정부출연금은 불인정 현물 가액을 환수함) 12.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단,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은 제외) 또는 지출원인행위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 중지 통보 또는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집행한 금액. 이때 제1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일괄하여 관리·사용하는 간접비는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말월 산입)한 금액 15. 현물로 계상한 세목을 현금으로 이중 계상한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나.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다.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라.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마.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바.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급여를 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사.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아.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자.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카.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함. 타.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감액되어 집행된 경우 당초 계획금액 대비 차액 및 전담기관장의 승인 없이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2. 내부인건비 가.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3.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나.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다.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우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구분	주요내용
	<p>3.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p> <p>4.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p> <p>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p> <p>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p> <p>[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p> <p>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p> <p>2.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p> <p>3.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p> <p>4.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p> <p>5.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금액</p> <p>6.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및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또는 수행기관 간 집행한 시험분석료(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p> <p>7.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p> <p>8.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로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e-Tube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지 않은 경우(외자구매 제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e-Tube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p> <p>9.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현물로 집행한 금액</p> <p>[연구활동비]</p> <p>1. 국외 출장경비</p> <p>가.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p> <p>나. 국외여비 지급일 또는 국외출장 결재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p> <p>다.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p> <p>라.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p> <p>마.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p> <p>2. 과제와 직접 관련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p> <p>가. 신문구독료(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p> <p>나.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p> <p>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p> <p>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p> <p>가.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p>



구분	주요내용
	<p>4.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p> <p>가.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로,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p> <p>나.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p> <p>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p> <p>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p> <p>마.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p> <p>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p> <p>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협약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p> <p>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p> <p>자.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p> <p>[연구과제추진비]</p> <p>1. 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p> <p>2. 참여연구원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p> <p>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출장 여비</p> <p>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p> <p>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p> <p>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p> <p>3.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p> <p>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p> <p>4.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p> <p>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p> <p>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p> <p>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p> <p>5.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p> <p>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p> <p>나.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p> <p>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p>



구분	주요내용
	<p>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p> <p>[연구수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총괄책임자의 평가, 사업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질행 인건비의 20%(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연차/단계/최종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집행한 금액 7.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수행기관 총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한 금액 및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 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함
간접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시된 간접비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3. 영리기관이 당초 사업계획서 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4.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5.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6.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력성숙과금



【별표 제5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제18조 1항 관련)

세목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외부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파견 및 피파견 기관의 파견인사 관련 공문서
학생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 제출 서류 없음(지출증명서류 기관 내 5년간 보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계좌이체증명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구매의뢰서 ○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e-Tube 등록 확인서 ○ 장비요령 제9조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대상 장비의 경우 장비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일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거래처의 재무재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연구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출장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내부 여비규정



세목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 계좌이체증명 ○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세미나 개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 기술도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기술도입계약서 - 기술검수조치 등



세목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게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 해외체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 임차계약서 사본 - 항공료 영수증 - 의료보험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증명
연구과제 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 계좌이체증명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신청서 -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③ 근무지 외 출장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같음 ○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 ○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연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신청서 - 계좌이체증명
기타 세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및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서식 제1호】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참여기간	20 ~ 20		

□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 여 기 간	20 ~ 20	참 여 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20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에 본 기업(기관)의 직원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본 기업(기관)에서 이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 귀하



【서식 제2호】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제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20	참여율		

상기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총괄책임자 (인)

○○○○○○○○ 귀하

별첨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서식 제3호】

사업비 청구서

□ 과제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제명			
총수행기간		당해협약기간	
총사업비		당해사업비	

□ 당해사업비 청구내역

사업비 (단위 : 원)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총계(E=A+D)
		현금(B)	현물(C)	계(D=B+C)	
출연금 금회청구내역 (단위 : 원)	기수령액 원 (₩)	금회청구차수 1차()/2차() /3차()/4차()		금회청구액 원 (₩)	
민간부담금 (현금) 납입내역주1)	차수	금액			누적비율
	1차	원정(₩)			%
	2차	원정(₩)			%
	계				

위 금액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제29조에 의거 출연금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지점명	은행	지점	계좌인감
계좌번호			(인)
예금주			

20 . . .

주관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 귀하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출연금 관리통장 사본(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포함) 1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청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주1) 민간부담금 현금이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된 후 출연금이 지급됨
(일괄 또는 출연금 지급비율에 따라 입금 가능하며 이는 사업별로 달리 정함)



【서식 제4호】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협약서(총괄표)

(수행기관 또는 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본 양식 활용)

□ 과제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수행기관1 (주관/참여)	수행기관2 (주관/참여)	수행기관3 (주관/참여)	수행기관4 (주관/참여)	계
1차년도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계						
2차년도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계						
3차년도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계						
계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장비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시작품제작비는 자산등재된 경우만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주관연구기관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4) : (인)

00000000 귀하



【서식 제5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총 사업비 (단위 : 원)	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사업비 사용명세서 및 사용실적보고서 내의 금액은 '원' 단위임.(사업계획서의 천원 단위가 아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6조 제1항 및 협약에 따라 사업비 사용 실적을 보고합니다.

- 첨 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
 2.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1부 - 서식 제1호
 3.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1부 - 서식 제6호
 4.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1부(현물 출자한 경우) - 서식 제8호
 5. 사업비 관련 승인내역 1부. - 서식 제9호
 6. 기타 제출서류
 -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20 . . .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재(영리기업일 경우) (인)
 총괄책임자 : (인)

00000000 귀하



〈첨부 1〉

※ 사업비 사용명세서 및 사용실적보고서 내의 금액은 ‘원’ 단위임.(사업계획서의 천원 단위가 아님)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총괄

가.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단위 : 원)

구분 비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계														

-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 3. 수행 기관 전체의 합임

나.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단위 : 원)

구분 비목	발생액	집행금액	잔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수익금					
합계					

※ 사용예정의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연차별 집행현황

① 1차년도

○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분 비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액			집행 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 : 원)

비목(세목)	이월내역			집행현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 ※ 1.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처리
- 2. 집행현황은 1차년도는 생략하며, 집행내역의 잔액은 재이월이 불가

○ 이자 및 수익금 집행현황

(단위 : 원)

구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액	사용예정금액
발생이자				
수익금				
합 계				

- ※ 사용예정인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2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③ 3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2. 기관별 사용현황

※ 주관기관(세부주관기관) / 참여기관별 작성
(시스템 입력 또는 엑셀파일 작성하여 별도 제출 가능)

가. 집행현황 총괄(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단위 : 원)

비 목	구 분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나.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단위 : 원)

비 목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 ※ 사용예정의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연차별 사용 내역

① 1차년도

○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 : 원)

비 목	구 분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 : 원)

비목(세목)	이월내역			집행현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 ※ 1.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처리
- 2. 이월내역 중 일부가 이월되어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대상임.
- 3. 집행현황은 1차년도는 생략하며, 집행내역의 잔액은 재이월이 불가함으로 반납대상임.

○ 이자 및 수익금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인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2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③ 3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라. 비목별 사용명세서(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주관기관의 장 확인을 위하여 첨부

① 직접비

[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봉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계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분(사용용도)	최초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액	이월액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 가능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 : 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현물)
								신용카드	
								계좌이체	
소계								원(현금: 원, 현물: 원)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원(현금: 원, 현물: 원)	



※ 연구활동비 내 국외 여비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국외여비								
소계		원(현금: 원)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분(사용용도)	최초협약예산	집행금액	비고
국내여비(시내교통비 포함)			
사무용품비 등			
회의비			
야근식대			
소계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참여율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연구수당							
소계		원(현금: 원)					

③ 간접비(영리기관인 경우)

(단위 : 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원(현금: 원)							



※ 간접비 내 지원인력 인건비 및 능률성과급

(단위 : 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지원인력 인건비						
능률성과급						
소계				원(현금: 원)		

④ 이자

(단위 : 원)

구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발생이자									
소계		원(현금: 원)							

마. 주관기관 자체정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차수	집행비목 (세목)	집행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불인정금액	사유
주관기관	1차년도						
	4차년도						
참여기관 1	1차년도						
	2차년도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계							

※ 불인정금액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 정산시 최종 확인하여 불인정 금액으로 확정



【서식 제6호】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외기관)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직인)
- 총괄책임자 : (인)
- 수행기간 :

1. 학생인건비 사용 및 검증결과

구 분	지급액 ^{주1)}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주2)}
금 액	원	원	원	원

- 주1) 해당과제 협약기간 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기재
- 주2) 반납액 = 사용잔액 + 부당집행액(정부 지분을 반영 금액)

2. 사용내역

성 명	과정명	전 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 ^{주3)}	비 고 ^{주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주3) 학생연구원의 재학기간 동안 지급액
- 주4)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



【서식 제7호】

자체 정산 결과 보고서

□ 과제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 사업비 집행 총괄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 연차정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별도 표기

□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반납금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6조 제2항 및 협약에 따라 사업비 자체 정산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00000000 귀하



【서식 제8호】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수행기관별 또는 세부과제별 별도 작성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본 양식 활용)

□ 과제현황

(단위 : 원)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장비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시작품제작비는 자산등재된 경우만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물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사용명세서(서식 제5호 <첨부 1>의 라. 비목별 사용명세서(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참조)

필요시, 사용내역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용내역서 등) 제출

20

수행기관명 :

(인)

00000000 귀하



【서식 제9호】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내역 확인서

(수행기관명 :)

□ 과제현황

(단위 : 원)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 승인내역 (전담기관에 공문 통보 또는 공문으로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가. 참여연구원

(단위 : 원)

변경전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율	참여기간	금액
총괄 책임자					
참여 연구원					
합계					

변경후(최종)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율	참여기간	금액
총괄 책임자					
참여 연구원					
합계					



나. 산업기술개발장비

(단위 : 원)

구분	장비명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산업기술개발장비						

다. 학생인건비 증액 내역

(단위 : 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학생인건비					

라. 수행기관 간 사업비 총액 변경 내역

(단위 : 원)

기관명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마. 간접비 변경 내역

(단위 : 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간접비					

바. 사업비 이월

(단위 : 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이월예산	이월사유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사. 사업비 관리계좌

기존계좌	변경계좌	변경사유



□ 통보내역

(단위 : 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기관정보					
대표자 변경					

산업기술혁신사업 수행에 따른 협약변경 승인(통보)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수행기관명 : (인)

○○○○○○○○ 귀하

별첨 : 사업비 관련 승인 득한 공문 사본 1부



【서식 제10호】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수행기관명 : _____)

□ 과제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 정산금 반납내역

(단위 : 원)

예산			집행액	반납내역				정산금 반납금액(D)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사업비 집행잔액 (a)	이자 (b)	불인정 금액 (c)	계 (C) =(a+b+c)	
	현금(B)	현물						
								$D=(A/(A+B)) \times C$

산업기술혁신사업 수행에 따른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을 통보합니다.

20

수행기관명 : _____ (인)

○○○○○○○○ 귀하

별첨 : 입금 확인증 1부.



【서식 제11호】

이월 승인 요청서

- 사업명 :
- 과제명 :
- 수행기간 :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 참여기관(참여기관 책임자) :

1. 이월 요청 내역

(단위: 천원)

해당 기관	세목	당초 계획금액	이월 요청금액	이월 사유
주관기관명	장비명	100,000	50,000	- 외국으로부터 구입 물품 배달 지연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미집행(기기명:) ¹⁾ - 근거 서류 : 별첨 계약서 ²⁾
"				
참여기관명	연구시설명			-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개발비 미집행(시설명:) ¹⁾ - 근거 서류 : 별첨 계약서 ²⁾
"				

1)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작성(기술적 내용 포함)

2) 지출원인행위(공급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사용계획수립(내부 공문 사본) 등 근거 자료

2. 별첨 : 계약서, 카다로그, 견적서, 내부 결재 받은 문서 등 관련 설명 자료 일체

상기와 같이 산업기술혁신사업 수행에 따른 이월금을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관기관명 : (인)
총괄책임자 : (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목 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제2장 장비관리체계

- 제4조 장비전문기관
- 제5조 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
- 제6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제7조 전담기관
- 제8조 수행기관
- 제9조 장비심의위원회

제3장 장비 기획

- 제10조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 제11조 사전기획
- 제12조 수요조사
- 제13조 장비 기획보고서

제4장 장비 도입심의

- 제14조 심의 대상
- 제15조 심의 요청
- 제16조 평가 방법
- 제17조 평가 실시
- 제18조 평가결과 확정
- 제19조 평가관리

제5장 장비 구매

- 제20조 구매원칙
- 제21조 계약원칙

- 제22조 계약방법
- 제23조 구매계획 등록
- 제24조 입찰공고
- 제25조 입찰참가
- 제26조 기초금액 결정
- 제27조 예정가격 결정
- 제28조 제안서 평가 등
- 제29조 개찰 및 낙찰
- 제30조 계약체결
- 제31조 검사

제6장 장비 등록 및 정보 관리

- 제32조 자산 등재
- 제33조 장비 등록
- 제34조 등록정보 관리

제7장 공동활용장비의 활용 및 이용

- 제35조 장비활용계획
- 제36조 이용원칙
- 제37조 장비 이용
- 제38조 장비활용실적
- 제39조 장비이용료 산정 등
- 제40조 수익금 관리
- 제41조 거점기관 등

제8장 장비 관리

- 제42조 장비 관리
- 제43조 인력 관리
- 제44조 이력 관리



제9장 장비 처분

- 제45조 처분신청
- 제46조 처분결정 등
- 제47조 장비양수 수요조사
- 제48조 양수기관 선정 등
- 제49조 양수장비 관리

제10장 보칙

- 제50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 제51조 사업참여 제한 등
- 제52조 포상 등
- 제53조 세부지침의 제정·운용 등
- 제54조 적용 특례
- 제55조 재검토 기한

부칙

별표

-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제10조 관련)
- [별표 2] 장비도입 심의기준(제17조 관련)
- [별표 3] 유희·불용장비 양수기관
선정기준(제48조제1항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6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 4.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개발장비”란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별표 1의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에 포함되는 장비로, 공동활용장비와 단독활용장비를 총칭(이하 “장비”라 한다)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2. “공동활용장비”란 본항제12호에 따른 수행기관의 장이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로,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승낙을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보유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단독활용장비”란 수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해당 기술개발 등을 함께 수행하는 다른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



4. “장비통합관리”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이튜브(e-Tube)”란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e-Tube”로 칭한다)을 말한다.
6. “유휴장비”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 가.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이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 나.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중 정상가동이 가능한 장비
 - 다. 수리, 부가·보조장치 장착 등 보수를 통해 향후 정상 가동이 가능한 장비
7. “불용장비”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의 만료, 화재·침수 등으로 인한 파손, 수리 불가능 등의 사유로 보수를 하더라도 향후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8. “장비전문기관”이란 장관이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을 말한다.
9.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 3천만원 이상 장비의 신규 도입, 유휴·불용장비의 처분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0. “보유기관”이란 장비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11. “설치기관”이란 장비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유기관과의 계약 등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수행기관”이란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보유 기관 및 설치기관을 총칭한다.
13.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의 기획, 도입, 구매, 이용, 관리, 처분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4. “기관관리자”란 수행기관에 제공된 e-Tube를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는 책임자로,



해당 기관의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장비 구매, 장비 등록, 장비·활용 정보 관리, 장비관리자 등 e-Tube를 통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담당자 지정·변경, e-Tube에 정보 등록·수정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

15. “장비관리자”란 장비를 직접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해당 장비의 이용시간을 배정하고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자에게 사용법을 교육하는 등 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6. “내자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장비의 구매를 말한다.
 17. “외자구매”란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18. “장비이용료”란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획득한 시험·계측·분석 결과와 그 결과의 가공·해석 등으로 얻어지는 편익에 상응하여 지불된 금전 대가로, 장비의 직접 가동비용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19. “수익금”이란 장비이용료 수입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액을 말한다.
- ②제1항 이외에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통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장비통합관리에 관해서는 이 요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공통운영요령에 따른다.

제2장 장비관리체계

제4조(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 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e-Tube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특허·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 ①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연의 기술 및 경제전문가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이하 “장비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관리와 장비관리의 연계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장비평가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장비전문기관은 별표 1의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장비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장비평가단의 구성방법, 자격기준, 자격 상실, 수당, 여비 등에 대하여는 공통운영요령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유희·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②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 ③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전담기관) 장관은 장비의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내 장비의 적정성·타당성 평가, 협약,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내 장비·사업비 등의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사업계획서 내 장비의 구축·활용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수행기관) ①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장비의 도입,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2. 장비도입심의요청서, 장비 수요조사서 등 신청 서류 제출
3.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기관관리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운영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유휴·불용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장비심의위원회) ①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유휴·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장비심의위원회는 기술·경제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장비 기획

제10조(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장관은 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전기획) ①통합관리 대상 장비를 도입하려는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장비 도입의 적정성·중복성, 장비의 활용성, 운영·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동활용장비를 도입하려는 수행기관의 장은 장비의 도입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친 사전기획을 실시하고,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공동이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발굴한 후, 동일·유사장비를 대상으로 중복도입 여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양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단독활용장비를 도입하려는 수행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장비 이용 가능성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리스·렌탈 등 임대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요조사) 공동활용장비를 도입하려는 수행기관의 장이 제11조제2항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e-Tube의 수요조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e-Tube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되, 수요조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결과를 e-Tube의 수요조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 기획보고서) ①수행기관의 장은 장비 기획보고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해당 사업의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장비도입심의요청서의 제출로 장비 기획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장비 도입심의

제14조(심의 대상) ①중앙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부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보조·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장비로 심의한다.
2. 사업 또는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소프트웨어의 도입. 단, 한글, MS오피스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첫해에만 심의를 실시한다.
4. 그밖에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서 도입을 승인하거나 불허한 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동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이후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30% 이상 금액 변경, 장비 변경, 사양 변경 등을 한 장비는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제15조(심의 요청) ①제14조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수행기관은 장비 도입심의요청서, 사업계획서, 그밖의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장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입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인 장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e-Tube를 통해 심의 요청
2. 구입금액이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인 장비의 경우에는 신규 또는 연차



- 협약 체결 이전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e-Tube를 통해 심의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e-Tube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장비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장비도입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의 요청
 4. 장비의 구입금액, 사양, 제품명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통운영요령 제27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심의 요청
- ②제1항의 수행기관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기획의 적정성, 장비도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장비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방법) ①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e-Tube를 통한 전자평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자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평가로 할 수 있다.

②중앙장비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를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실시) 중앙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항목별 심의내용 등 심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2. 장비 도입의 적정성
3. 기 도입장비와의 중복성
4. 장비의 활용성
5. 장비운영계획의 적절성
6. 장비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7. 공동활용장비의 경우에는 수요조사의 신뢰성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양수 가능성
8. 단독활용장비의 경우에는 공동활용장비 이용 가능성 및 리스, 렌탈 등 임대 가능성
9. 외산장비의 경우에는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제18조(평가결과 확정) ①중앙장비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해당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가(可) : 장비기획의 적정성, 장비도입의 타당성, 장비이용·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 2. 부(否)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 공동이용 수요가 충분하지 않는 장비, 공동 활용장비 또는 리스·렌탈장비 이용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등 장비기획의 적정성, 장비도입의 타당성, 장비이용·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3. 보완 : 장비기획의 적정성, 장비도입의 타당성, 장비이용·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구입가격이 적정하지 않는 등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②장비전문기관은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장비 이용, 리스·렌탈 이용, 장비사양 조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③수행기관은 ‘가(可)’로 결정된 장비는 e-Tube를 통해 구매를 추진하고,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관리) 장비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평가결과 이행 여부 및 이 요령에 따른 장비의 관리·운영 여부를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연차·단계·최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장비 구매

제20조(구매원칙) ①통합관리 대상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e-Tube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조달구매 당연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내자구매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고, 외자구매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수행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계약원칙) ①장비 구매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장비 구매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방법) ①수행기관은 통합관리 대상 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전 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밖에 입찰공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구매계획 등록) 수행기관은 제18조에 따라 ‘가(可)’로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 e-Tube의 전자입찰시스템에 구매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입찰공고) ①수행기관은 e-Tube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공고문을 게시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달구매 당연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입찰공고문을 e-Tube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의 시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긴급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는 5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은 입찰공고에 구매장비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입찰참가) ①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와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입찰참가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한 후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서 개찰 전까지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기초금액 결정) ①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②수행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예정가격 결정) ①e-Tube를 통해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기초금액을 토대로 e-Tube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제28조(제안서 평가 등) ①수행기관은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수행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수행기관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 ④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⑤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제6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9조(개찰 및 낙찰) ①수행기관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수행기관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언하여야 한다.



- ③수행기관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고, 동일가격 입찰자에게 통보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④제28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는 제안서 평가결과 1순위자와 가격협상을 하여야 하며, 1순위자와 가격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1순위자의 제안서 내용을 차순위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⑤수행기관은 낙찰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고 통보한다.
- ⑥수행기관은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때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의 절차를 실시한다.

제30조(계약체결) ①수행기관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비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구매계약서, 계약일반·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공고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검사) ①수행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확정된 장비 정보를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장비 등록 및 정보 관리

제32조(자산 등재) 통합관리 대상 장비를 구매한 보유기관은 해당 장비의 납품 및 제31조의 검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계 법규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장비를 자산으로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3조(장비 등록) ①보유기관은 구입가격 또는 제32조의 자산등재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장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장비에 대하여는 제32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Tube에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②보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는 때에는 기본정보, 이용정보, 부가정보



등 e-Tube에서 정하는 장비 정보 및 기관관리자·장비관리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e-Tube를 통해 구매한 장비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되는 정보를 제외한 설치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은 e-Tube에 등록된 보유기관의 장비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NTIS)’ 및 각 전담기관의 ‘평가관리시스템(PMS)’ 등과 연계한다. 이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한 수행기관의 장비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수행기관은 공동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 이외에 자체 예산 등으로 도입한 장비에 대하여도 e-Tube에 장비정보를 등록하여 공동활용장비로 활용하거나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⑤장비전문기관은 영리기업으로 하여금 국산장비, 리스·렌탈장비 등의 장비정보를 e-Tube에 등록하도록 하여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부 이용자가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등록정보 관리) ①수행기관은 ‘e-Tube’에 등록된 장비의 소유권, 설치장소, 장비관리자, 이용료, 보조·부가장치 장착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e-Tube를 통해 해당 장비 정보를 수정한 후 장비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관은 공동운영요령 제26조에 따른 협약체결을 통해 비영리기관이 도입하는 단독 활용장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공동활용장비로 전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장비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장비정보 등록·관리 상황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연차·단계·최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공동활용장비의 활용 및 이용

제35조(장비활용계획) ①수행기관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작년도 부터 성과활용기간 종료 직전년도의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장비활용계획을 장비전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9조에 따라 장비를 이전받은 양수기관은 양수년도부터 3년간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장비활용계획을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비활용계획은 장비전문기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e-Tube에 등록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 ④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제38조에 따라 수행기관과 장비양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비활용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이용원칙) ①외부 이용자는 공동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동활용장비를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②보유기관은 제33조제4항에 따라 e-Tube에 등록한 장비를 외부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③수행기관은 외부 이용자가 장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절차, 방법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e-Tube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장비 이용) ①외부 이용자는 e-Tube를 통해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을 신청한다. 다만, e-Tube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수행기관은 외부 이용자가 장비이용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재 가동여부, 사용가능 일시, 이용료, 장비관리자 등의 정보를 e-Tube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 ③수행기관은 제1항의 장비 이용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 ④수행기관은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이용에 필요한 절차, 방법, 서비스 내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받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해당 신청자의 장비이용정보를 e-Tube에 등록한다.
- ⑤이용자는 수행기관이 정한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⑥수행기관은 이용자가 장비 이용 관련 자료 및 결과에 대한 보안유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장비 이용 과정에서 장비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공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내부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수행기관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 ⑧수행기관은 이용자의 장비 이용이 종료되면 해당 장비의 사용실적을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장비활용실적) ①수행기관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 시작년도의 다음 연도부터 성과활용기간 종료년도의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전년도 장비활용실적을 장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9조에 따라 장비를 이전받은 양수기관은 양수년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장비활용실적을 장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비활용실적은 장비전문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e-Tube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보유기관은 장비활용률, 장비가동률 등 활용실적을 e-Tube를 통해 관리한다.

⑤제4항의 장비활용률은 기술개발을 위한 내부 이용, 외부 이용자의 이용 등 연간 1회 이상 이용된 공동활용장비가 전체 공동활용장비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단, 이용목적, 이용일시, 이용자 등이 포함된 이용실적이 e-Tube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하게 이용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의 장비가동률은 공동활용장비의 실제 가동시간이 연간 가동가능시간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단, 전처리·후처리 등 장비 가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가동시간에 포함하고, 고장 수리·검교정 등 불가피한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간 가동가능시간에서 제외한다.

⑦보유기관은 수년에 1회 비교실험하는 기준 측정장비 등 특수목적장비, 사용시간은 짧지만 사용횟수가 많은 장비 등 장비 특성상 제6항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 장비가동률 산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비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장비전문기관의 장은 보유기관의 장비활용실적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제39조(장비이용료 산정 등) ①수행기관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장비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 사용횟수,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장비이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공동활용장비별 이용료 산정기준을 e-Tube에 등록하여 외부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익금 관리) ①수행기관은 별도 또는 통합 통장을 두어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다. 단, 통합 통장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사업별 또는 장비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 ②보유기관은 수익금을 고장 수리, 보조·부가장치 장착, 장비 교체 등 공동활용장비에 재투자하거나 공동활용장비의 시약·재료·소모품비, 장비관리자의 인건비·연구수당·교육훈련비, 공공요금 등 장비운영·관리와 관련된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보유기관은 당해연도 수익금 사용실적과 차년도 수익금 사용계획을 연차·단계·최종·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거점기관 등) ①장관은 장비거점기관, 우수센터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장비거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1. 해당 산업의 장비 도입·이용 로드맵 수립
2. 해당 산업의 장비 도입의 타당성 사전 검토
3. 해당 산업의 장비 집적화 및 공동이용 촉진
4. 해당 산업의 장비 서비스 상담(기술자문) 및 지원
5. 그밖에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장 장비 관리

제42조(장비 관리) ①수행기관은 최적의 운영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이용자가 유의사항,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관리자는 법률이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이용자에게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비의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인력 관리) ①수행기관은 장비관리자에게 장비 기본원리 및 실제 운영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e-Tube의 장비관리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장비관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은 e-Tube의 장비관리자 인재뱅크를 통해 장비관리자의 경력개발관리(Career Development Program), 구인, 구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4조(이력 관리)** ①수행기관은 장비 운영·관리 현황을 e-Tube의 장비일지에 기록·관리하여 장비의 현재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수행기관은 제1항의 장비일지를 부품·소모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검교정 실시, 유희·불용장비의 판별 및 이전·폐기의 판단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장 장비 처분

- 제45조(처분신청)** ①보유기관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장비 중 유희 또는 불용 장비라고 판단되는 장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이전(양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e-Tube를 통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②보유기관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유희·불용장비에 대하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 ③보유기관은 장비 처분과 관련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결과를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다.

- 제46조(처분결정 등)** ①중앙장비심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활용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유희·불용장비 여부를 판정한다.
- ②장비전문기관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불용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판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라 판정된 유희장비는 공동활용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에 무상 양여를 원칙으로 하되, 국산 유희장비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제45조제1항의 처분 신청일로부터 6월 이상 처분되지 않은 유희장비에 대하여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등에 무상 양여, 매각,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⑤보유기관은 제3항에 따라 불용장비를 처분하거나 제4항 단서에 따라 유희장비를 처분한 때에는 처분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결과를 장비전문기관에 제출하고, e-Tube에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 ⑥보유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장비 처분을 통해 매각대금 등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40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산 유희장비를 공적개발원조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장비양수 수요조사) ①장비전문기관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유희장비로 판정된 장비를 e-Tube에 공고하여 양수 희망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양수 희망기관은 장비이전(양수) 신청서 및 이전장비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e-Tube를 통해 장비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은 양수 희망 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제48조(양수기관 선정 등) ①장비전문기관은 제47조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양수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양수기관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양수기관 선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비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양수기관과 해당 장비의 보유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유희장비의 이전 재배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설치비, 수리비, 부품비(소모품비를 제외한다),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양수장비 관리) ①제48조제3항에 따라 장비를 양도하는 보유기관과 해당 장비의 양수기관은 장비 이전을 완료한 후, 장비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e-Tube에 관련 정보를 수정·등록하여야 한다.

②양수기관은 장비를 이전받은 날로부터 3년간 해당 장비의 장비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50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중앙장비심의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장비전문기관·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평가위원, 평가의견, 평가결과, 회의록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
3. 장비 이용자가 보안유지를 요청한 사항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장비전담기관·전담기관의 소속 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사업참여 제한 등)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해당 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5조의 장비활용실적보고서 또는 장비활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단, 제4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8. 그 밖에 공통운영요령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불인정한다. 단, 보안과제 등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경우
 2.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장비를 e-Tube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경우
 3.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후에 해당 장비 정보를 e-Tube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당초 공동활용장비로 도입하였으나, e-Tube에 단독활용장비로 등록하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제52조(포상 등) ①장관 또는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 활용률 및 가동률이 우수한 보유기관 및 성과활용 총괄책임자, 장비 담당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 또는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장비 활용률 또는 가동률이 우수한 기관 및 총괄 책임자에게 우대 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제40조의 장비 수익금의 범위에서 장비 활용으로 매출발생이 크거나 장비 관리 및 외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뛰어난 장비관리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세부지침의 제정·운용 등) ①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장비통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장비전문기관은 장비도입심의 요청서 등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서식을 e-Tube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적용 특례)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 또는 그랜트형 과제의 경우에는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4.04.0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제10조 관련)

대분류(7개)	중분류(44개)
A. 광학 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A.2 현미경 A.3 카메라 및 영상기 A.4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전자 영상장비
B.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2 성형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 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전기 전자 측정장비 D.2 전기 전자 시험장비 D.3 전기 전자 분석장비 D.4 전기 전자 신호발생장비 D.5 전기 전자 교정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전자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2 장비 소프트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A. 광학·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 A.11 광학망원경(Optical Telescope) : 가시광선 대역의 빛을 초점으로 모아 확대된 상을 만들어 보거나 사진을 찍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
- A.12 전파망원경(Radio Telescope) : 가시광선 대역을 이용하는 광학 망원경과 달리 전파대역의 정보를 이용하고 장파장의 전파를 이용하는 망원경
- A.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망원경

A.2 현미경

- A.2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 유리렌즈를 사용하며 가시광선을 광원으로 이용하여 칼라로 관찰이 가능한 현미경
- A.22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평광한 전자선을 사용하여 시료를 투과시킨 전자선을 전자렌즈로 확대하여 관찰하는 전자현미경
- A.23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시료 표면을 전자선으로 주사하여 입체 구조를 직접 관찰하는 기능을 가진 전자현미경
- A.24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투과전자를 검출하여 사상을 얻는 방식의 전자현미경
- A.25 주사터널링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 시료 표면에 전자를 쏘아준 후, 전자가 터널링을 일으키는 현상으로부터 시료의 구조를 알아내는 현미경
- A.26 원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 시료와 탐침간에 움직이는 원자간력 (인력 또는 척력)을 검출하여 검출된 신호가 일정해지도록 양쪽의 거리를 제어하면서 시료표면을 주사하여 표면의 3차원형상을 측정하는 현미경
- A.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현미경

A.3 카메라 및 영상기

- A.31 카메라(디지털 포함)(Camera) : 내장된 메모리에 디지털 영상데이터를 저장한 후 컴퓨터나 텔레비전에서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영상장비



- A.32 비디오카메라(Video Camera) : 텔레비전 수상기와는 반대로, 화상을 전기적 신호(비디오신호)로 변환시켜 재현하는 영상장비
- A.33 특수카메라(Special Camera) : 수중에서 조작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수압에 견디며 침수되지 않게 고안되고, 또 조작이 쉬워 핀트가 확실하게 맞도록 하며, 바닷물등에 부식되지 않는 영상장비
- A.34 영사기(Projectors) : 운동을 순간적으로 분석·기록한 영화필름의 화상을 연속적으로 영사막에 비추고, 눈의 잔상현상을 이용하여 운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며 동시에 기록된 음향을 재상하는 영상장비
- A.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카메라 및 영사기

A.4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
- A.41 광도 및 복사 측정장비(Photometry and Radiometry Measuring Equipment) : 보통 2개의 빛의 광도비를 측정하는 것이 많고, 가시광 뿐만 아니라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이용하여 빛의 강도와 휘도, 조도, 광속 등의 물리량과, 물체의 측광량을 측정하는 장비
- A.42 광학측정장비(Optics Measuring Equipment) : 광학을 이용한 길이 및 각도 분야의 정밀 측정을 하는 것으로 길이 분야의 평면도 측정에 사용되는 옵티컬 플랫과 평행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옵티컬 파라렐, 미소시편의 길이,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2차원 측정기, 윤곽투영기, 정밀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준기에 의한 측정장비 등을 포함한 장비
- A.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전자 영상장비



B. 회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1 혼합장비

-
- B.11 실험용 혼합기(Mixers) : 실험실에서 시멘트, 물, 골재 등이나 혼화재료를 가하여 혼합할 경우에 혼합이 빠른 시간 내에 골고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
 - B.12 실험용 교반기(Agitators) : 실험실에서 물질을 혼합시킬 때 자력으로 교반시켜주는 장비
 - B.13 실험용 진탕기(Shakers) :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실험 용기내의 용액이나 물체를 흔들어서 내부 물체를 혼합 또는 반응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장비
 - B.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혼합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
- B.21 합성장비(Synthesizer) : 세포가 증식할 때 DNA가 분리·복제되어서 2개의 복제된 DNA를 만드는 현상을 이용하여 정밀한 온도조절에 의해 DNA의 양을 수백만배 증폭하는 장비
 - B.22 배양장비(Incubator) : 병원 세균검사실이나 기타 연구소, 실험실에서 각종 미생물 배양이나 세포 등을 배양 할 때 온도, 습도 또는 유동 조건 등을 조절하여 주는 장비
 - B.23 발효장비(Fermenter) : 미생물 작용으로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또는 산화 환원적 변화를 일으키는, 즉 발효 현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비
 - B.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DNA/단백질 제조장비

B.3 분리정제장비

-
- B.31 원심분리장치(Centrifuge) : 원심력을 이용하여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들을 분리·정제·농축하는 장비
 - B.32 증류장치(Distillation Equipment) :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액체를 증류시켜 순수한 성분을 얻는 장비



- B.33 결정화장치(Crystallization Equipment) : 재결정을 통해 순도를 높이는 반응장비
- B.34 승화장치(Sublimation Equipment) : 고체로부터 기체로의 상변화를 얻는 장비
- B.35 추출장치(Extraction Equipment) : 물질(혼합물)의 특정성분만을 녹여서 얻을 수 있는 장비
- B.36 투과장치(Permeation Equipment) : 어떤 물질계나 구조에 액체나 기체 등의 확산이 있는 경우에 그 구조가 확산성 물질분자의 통과나 침입을 허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
- B.37 자동단백질분리기(Automatic Protein Separator) : 단백질 성분을 분리하는 장비
- B.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
- B.4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 물질 특유의 농도평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으로서 이동상에 기체를 사용하는 장비
 - B.42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 비휘발성 유기물질의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각 성분이 두상에 대해 서로 다른 분포도를 갖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액체 및 비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정량 및 정성분석을 하는 장비
 - B.43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 : 액체시료를 이온교환컬럼에 고압으로 전개시켜 분리되는 각 이온(음이온, 양이온)의 크로마토그램을 작성하여 분석하는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 B.44 겔침투크로마토그래피(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 고분자에 다리걸침반응(가교반응)을 시켜서 얻은 겔을 운반체(캐리어)로 사용한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 B.45 박막크로마토그래피(고효율TLC시스템)(Thin Layer Chromatography) : 정지상으로 미세한 흡착제 입자를 얇게 입힌 정지상 판(TLC)을 사용하여 유기물을 분석하는 장비
 - B.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 B.51 핵자기공명분광기(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 핵의 자기 쌍극자모멘트와 외부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핵자기 공명)을 관찰하여 화합물의 구조, 자기적성질 또는 다른 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광학장비
- B.52 적외선분광기(Infrared Spectrometer) : 적외선을 그 파장에 따라 분해하여 연구하는 것으로서 분자 진동에 의한 특성적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시료를 정량·정성 분석하는 장비
- B.53 자외선분광기(Ultraviolet Spectrometer) : 어떤 시료 분자가 어느 파장의 빛을 흡수하며, 그 흡광도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
- B.54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meter) : 액체 시료를 고온의 플라즈마 등 불꽃을 이용하여 시료에 있는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하는 빛을 측정하여 각 원소의 정성 및 정량을 목적으로 하는 분광분석기기
- B.55 원자흡수분광기(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 단색화 장치 및 검출기를 통해 기체상태 원자의 광원으로부터 빛의 흡수량을 조사하여 시료 중에 포함된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 B.56 라만분광기(Raman Spectrometer) : 레이저의 포톤중에서 라만포톤을 검출하여 분자들 상호간에 결합세기, 물질의 표면, 조해석 및 반도체의 스트레스 측정, 크리스탈의 장력 조정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기기
- B.57 발광분광기(Luminescence Spectrometer) : 자외선, 근자외선, 가시광선영역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분광광도계가 포함되며, 빛의 양을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측광하는 장비
- B.58 글로우방전분광기(Glow Discharge Spectrometer) : 글로우방전으로 생성된 아르곤(Ar)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고체 시료에 포함된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되는 각 원소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깊이 방향 및 벌크 정성·정량분석장비
- B.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 B.61 동위원소비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 동위원소간의 질량 차이를 분석하여 상대비를 측정하는 장비
- B.62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 아르곤 플라즈마로 원소를 이온화시키고, 질량분석기로 이온을 분리하여 시료 중의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 B.63 이차이온질량분석기(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 운동 에너지가 큰(3~10keV) 원자(Ar, Xe, Cs⁺ 등)로 표면을 때릴 때 방출되는 이온을 검출하는 장비
- B.64 매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질량분석기(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 분자량이 비교적 큰 시료와 매트릭스가 혼합된 결정에 순간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이온화시킨 후, 이온들을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를 통과시켜 검출기까지의 도달시간을 측정하여 분자량을 얻는 장비
- B.65 가속질량분석기(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 가속된 탄소 입자에 자기장을 걸어줄 때 질량에 따라 휘는 정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 동위원소를 분리하여 동위원소비를 구할 수 있으며 ppq 단위의 정밀도로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를 검출하는 장비
- B.66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용출해 나오는 성분의 질량스펙트럼으로부터 물질의 분자량과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비
- B.67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성분들을 분리시킨 후, 이 성분들을 질량분석기에 도입시켜 얻어진 질량스펙트럼을 해석함으로써 물질의 화학적 구조, 화학 반응, 분자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 B.68 양성자전이질량분석기(Proton Transfer Reaction Mass Spectrometer) : 양성자 전이 반응을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에 수소이온을 전이시켜 이온화하여 분자구조의 파괴 없이 질량을 분석하는 장비
- B.69 푸리에변환이온사이클로트론공명질량분석기(Fourier Transform-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er) : 이온화 된 시료를 자기장 내로 진입시키면, 전자기장 상호작용에 의해 이온은 회전운동을 하게 되고, 회전운동의 주파수를 측정하여



시료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장비

B.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71 혈액가스분석기(Blood Gas Analyzer) : 혈액, 혈장, 혈청내의 가스 (PCO₂, PO₂), pH를 측정하는 장비

B.72 DNA서열분석기(DNA Sequencing Analyzer) :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주는 장비

B.73 아미노산분석기(Amino Acid Analyzer) : 다양한 아미노산을 동시에 분석 가능하며, 동일한 컬럼(column)과 버퍼(buffers)로 가수분해와 생리적 아미노산 모두 분석이 가능한 장비

B.74 미생물분석기(Microbiology Analyzer) : 세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기구인 세균검정기와 실험실에서 박테리아 콜로니를 계수하는데 사용하는 코로니카운터, 배지, 각종 생화학적 기질, 감수성 검사용 약제 등을 이용하여 각종 미생물을 배양, 동정 및 검정을 위한 미생물자동동정기 등의 장비

B.75 방사성동위원소분석기(Radioisotope Analyzer) : 동위원소가 첨가되어 있는 시료의 방사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장비

B.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바이오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1 선반장비(Lathe and Turning Machine) : 공작물의 양 끝단 또는 한 쪽을 잡고 회전시키면서 공작물의 직각 방향에서 바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을 가공하는 장비



- C.12 밀링장비(Milling Machine) : 회전하는 주축에 밀링 커터를 부착하고, 공작물을 절삭하는 장비
- C.13 드릴링장비(Drilling Machine) : 공기압축기로부터 공급된 압축공기로 드릴 내의 피스톤을 왕복 운동시켜 공구에 압력과 회전을 가하여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장비
- C.14 보링장비(Boring Machine) : 보링머신의 주축과 지지대 사이에 설치되어 구멍 내면을 절삭하거나 확대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 C.15 연삭장비(Grinding Machine) : 원통연삭은 슷돌바퀴의 회전 운동과 공작물의 회전 이송운동으로 원통의 내면, 정면, 측면 등을 연삭하는 장비
- C.16 CNC장비(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Machine) : 컴퓨터가 내장된, 수치와 기호로서 구성된 정보를 매개수단으로 하여 기계의 운전을 자동 제어하는 장비
- C.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절삭장비

C.2 성형장비

-
- C.21 프레스장비(Press Machine) : 유체, 기체 등 압력을 사용하여 가압력을 얻는 동력 장비
 - C.22 절곡장비(Bending Machine) : 굽힐 때 사용하는 전용 프레스로 원하는 형상으로 굽힐 수 있는 장비
 - C.23 압연장비(Rolling Machine) : 소재를 다이 사이에 삽입하고 힘을 가하여 소성 변형으로 수나사의 나사산을 가공하는 장비
 - C.24 주조장비(Casting Machine) : 금속을 가열하여 용해시킨 다음 주형에 주입하여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장비
 - C.25 사출장비(Injection Molding Machine) : 칩 또는 분말 상태의 가소성 물질을 사출 성형기의 실린더 내부에 주입하고 가열·용융하여 가압 플런저로 금형 속에 압입하여 형상을 만드는 장비
 - C.26 용접 및 접합장비(Welding and Joining Machine) : 금속판을 포개어 놓고 위아래에 전극을 대어 전류를 통하게 하여 한 부분만을 이어 붙이는 장비
 - C.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형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장비

- C.31 컨베이어(Conveyor) : 수평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속 작업의 이송 장비
- C.32 리프트장비(Lifting Equipment) : 물건을 들어 운반하기 위한 장비
- C.33 농작업장비(Agricultural Machine) :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업기계 또는 장비
- C.34 자동화장비(Automatic Machine) : 로봇, 생산자동화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
- C.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동화 및 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 C.41 섬유가공장비(Textile processing Machinery) : 편사기, 편직기 등 섬유를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 C.42 섬유염색및봉재장비(Dyeing and Sewing Machine) : 섬유염색 및 재봉에 이용되는 장비
- C.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 C.51 리소그래피장비(Lithography) :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공정으로 시작해 노광, 현상, 에칭, 포토레지스트 제거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
- C.52 박막형성장비(Thin film process Equipment) : 금속 및 비금속과 같은 재료를 진공 중에서 가열, 증발 시켜서 이를 피착물에 증착시킬 수 있도록 고진공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비
- C.53 식각세정장비(Etching Equipment) : 회로패턴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화학물질이나 반응성 GAS를 사용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장비
- C.54 이온주입장비(Ion implantation Equipment) : 회로패턴과 연결된 부분에 불순물을 미세한 GAS입자 형태로 가속하여 웨이퍼의 내부에 침투시킴으로서 전자소자의 특성을 만들어 주는 장비
- C.55 조립장비(Assembler) : 인쇄회로기판 조립 및 표면실장 생산라인에서 표면 실장된 전자부품을 납땜하거나 기판 위에 도포된 납땜 페이스트가 녹아 전자부품과



회로를 연결시키는 장비

- C.56 검사장비(Tester) : 핀보드를 경유하여 전자부품의 회로에 흐르는 전기량을 측정함으로써, 실장 배선판의 양, 부를 판단하여 인쇄회로기판조립체에 납땀된 전자부품의 납땀 불량률 검사하는 장비
- C.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 C.61 가열로 및 오븐(Furnace and Oven) : 챔버안에서 건조나 가열의 목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실험실에서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설치한 장비
- C.62 건조장비(Drying Equipment) : 화학실험실에서 실험기구를 말리거나 시약과 시료에서 수분이나 용액을 없애는데 쓰는 장비
- C.63 열처리장비(Heat treatment Equipment) : 금속재의 열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류 및 장비
- C.64 냉동/냉각장비(Freezing/Cooling Equipment) : 실험에 사용되는 시료나 약품 등을 저온이나 영하의 온도로 보관하기 위한 장비
- C.65 환기장치(Ventilator) :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 C.66 펌프(Pump) : 전동기나 내연기관 등의 원동기로부터 기계적 에너지를 받아서, 액체에 운동 및 압력에너지를 주어 액체의 위치를 바꾸어 주는 장비
- C.67 압축장치(Compressor) : 공기압축기나 압축공기가 소정의 압력을 유지하는 지를 시험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 C.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 C.71 충격시험기(Impact Testing Machine) : 급가열이나 급냉시 발생하는 열응력으로 인한 재료의 변화를 측정하는 시험장비
- C.72 만능시험기(Universal material Testing Machine) :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하여 인장시험, 압축시험, 굽힘시험 등 세가지 종류의 시험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재료시험장비

- C.73 경도시험기(Hardness Tester) : 물질의 굳기를 검사하는 장비
- C.74 피로시험기(Fatigue Testing Machine) : 반복적인 동적하중을 받는 금속재료나 고강도 플라스틱의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반복하중을 주는 재료시험장비
- C.75 비파괴검사장비(Non destructive Examination Equipment) : 실험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도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장비
- C.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물성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
- C.81 기후환경시험장비(Climate Environment Testing Machine) : 기후환경에 대한 시험 및 분석능력으로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 C.82 진동내구시험장비(Vibration Endurance Testing Machine) : 진동을 발생하고 그 것을 시험기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시험기로서, 진동원인 및 내구성평가에 사용되는 장비
 - C.83 피로내구시험장비(Fatigue Endurance Testing Machine) : 반복적인 동적하중을 받는 물질의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반복하중을 주는 시험장비
 - C.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뢰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 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측정장비

-
- D.11 전압/전류/전력 측정장비(Voltage/Current/Power Meter) : 전기량 또는 전기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 D.12 통신 측정장비(Telecommunication/Transmission Quality Tester) : 전자적인 현상을



이용하거나 계 측하기 위한 장치 및 통신용 계 측 장비

- D.13 전자파 측정장비(Electro Magnetic Tester) : 전자파는 전하 입자가 가속을 받아서 일어나는 에너지 의 복사로 전계와 자계의 에너지가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을 광속도의 정속도로 자유공간에 전파되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장비
- D.14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전기진동이나 펄스처럼 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비
- D.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장비

D.2 시험장비

- D.21 전기시험장비(Electrical Testing Equipment) : 전기량 또는 전기의 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장비
- D.22 전자통신시험장비(Electronic and communication Testing Equipment) : 입력된 음성신호, 영상신호 등의 각종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적합한 신호로 전달해 주는 장치 시험하는 장비
- D.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험장비

D.3 분석장비

- D.31 스펙트럼분석기(Spectrum Analyzer) : 주기적인 순환함수에서 사인 성분들의 상대적인 진폭을 측정하기 위한 수학적 측정장비
- D.32 고속푸리에변환분석기(Fast Fourier Transform Analyzer) : 음향신호를 주된 대상으로 신호 파워의 주파수 분포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주파수 분석장비
- D.33 로직분석기(Logic Analyzer) : 전기·전자 장비설계를 위한 로직분석 장비
- D.34 네트워크분석기(Network Analyzer) : 하나의 기계 안에 주파수 발생기와 스펙트럼 분석기가 들어 있어서, 입력과 출력의 주파수신호 분포결과를 서로 나눔으로써 S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장비
- D.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장비



D.4 신호발생장비

- D.41 무선주파수 발생장치(Radio Frequency Generator) : 고주파 신호를 발생하는 전자 장비
- D.42 임의제너레이터(Arbitrary Waveform Generator) : 전자 테스트 장비의 전기파형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며, 파형에 대한 분석 및 테스트 장비의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 D.43 펄스발생기(Pulse Generator) : 내부회로 또는 전자테스트 장비에 펄스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장비
- D.44 영상음성신호발생기(Audio/video Signal Generator) : 영상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동기 신호들을 발생하는 전자장비
- D.45 함수발생기(Function Generator) : 전자 테스트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전기파형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장비
- D.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호발생장비

D.5 교정장비

- D.51 전류교정기(Current Calibrator) : 전류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 D.52 전압교정기(Voltage Calibrator) : 전압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 D.53 주파수교정기(Frequency Calibrator/Reference) : 발전된 불규칙한 전력 주파수를 규정체에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 D.54 다기능교정기(Multi-function Calibrator) : 전류, 전압, 주파수 등을 측정하면서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이 가능한 장비
- D.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정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전자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 E.11 데이터처리시스템/컴퓨터(Computers) :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계산을 수행하거나 작업 통제하는 장비
- E.12 컴퓨터서버(Computer Servers) : 주된 정보의 제공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작업이나 정보의 수행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장비
- E.13 데이터 저장장치(Storage Devices) : 광학적, 전기적 방법으로 영상 신호나 데이터를 저장 또는 판독하는 가능한 소형의 저장매체로 컴퓨터 시스템에 각종정보를 저장시킬 수 있는 장비
- E.14 데이터입 출력장비(Data input and output Devices) : 컴퓨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각종 장비
- E.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하드웨어

E.2 장비 소프트웨어

- E.21 시스템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 : 컴퓨터 시스템의 개별 하드웨어 요소들을 직접 제어,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운영소프트웨어
- E.22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s Software) : 분석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구동이나 분석 등을 위해 운영체제 위에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 E.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
- F.11 온도 및 열 측정장비(Temperature and Thermal Measuring Equipment) :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는 체계의 열량 변화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열량계는 고체와 액체 시료의 연소열을 측정하는 장비
 - F.12 습도 및 수분 측정장비(Humidity and Moisture Measuring Equipment) : 대기 중의 수증기 상태를 수량적으로 표시한 습도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
 - F.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
- F.21 치수 측정장비(Dimension Measuring Equipment) : 길이, 면적, 부피, 각도등을 측정하는 장비
 - F.22 좌표 및 형상 측정장비(Coordinate Measuring Machine) : 사진상의 평면좌표와 형상을 측정하는 장비로, 해석적 사진측량(항공삼각측량, 응용사진측량, 지적측량, 수치사진측량 등)에 기본이 되는 장비
 - F.23 표면거칠기 측정장비(Surface Roughness Measuring Equipment) : 금속표면의 다듬질 가공 시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의 정도인 표면거칠기를 측정하는 장비
 - F.24 레이저 측정장비(Laser Measuring Equipment) : 레이저의 단색성 지향성 등 여러 가지 특성 중 간섭성을 이용하거나 단색성을 이용하여 길이, 각도, 및 변위(진직도, 직각도, 평면도, 평행도, 두께 등)를 측정하는 장비
 - F.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
- F.31 시간 및 주파 측정장비(Time and Frequency Measuring Equipment) : 시간 및 주파를 측정하는 장비



F.32 속도 및 회전수 측정장비(Velocity and Revolution Measuring Equipment) : 속도 및 회전수를 측정하는 장비

F.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41 질량 및 무게 측정장비(Mass and Weight Measuring Equipment) :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 등 물질의 질량 및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

F.42 부피 및 밀도 측정장비(Volume and Density Measuring Equipment) : 물질의 부피와 물질 속의 원자나 분자 배열의 소밀도, 합금이나 혼합물 속의 성분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F.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51 힘 및 토크 측정장비(Force and Torque Measuring Equipment) : 물체를 체결하거나 풀려고 할때, 회전축이 받는 힘의 크기, 즉 제품의 나사부에서 발생하는 토크의 힘을 측정하는 장비

F.52 압력 및 진공 측정장비(Pressure and Vacuum Measuring Equipment) : 유체나 장비에 걸리는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거나 진공을 측정하는 장비

F.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61 음향 및 소음 측정장비(Acoustics and Noise Measuring Equipment) : 음의 높낮이, 크기 및 음원의 위치, 소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F.62 진동 및 충격 측정장비(Vibration and Shock Measuring Equipment) : 회전체축계의 공진이나 부하 변화 등에 의하여 회전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현상인 비틀림 진동을 측정하는 장비

F.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
- F.71 점도 및 유속 측정장비(Viscosity and Flow Velocity Measuring Equipment) : 유동하는 액체의 내부에 생기는 내부 마찰저항(점성), 유체의 점성률(점도) 크기를 파악하여 그 물질의 점도를 측정하는 장비
 - F.72 액체/기체유량 측정장비(Liquid/Gas Flow Rate Measuring Equipment) : 투명한 관을 여러 개로 만들고 그 속에 유체를 흘려보내 유속, 압력, 유량 등을 실험하는 장비
 - F.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
- G.11 임상진단용엑스선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X-ray Machine) : 고전압으로 하전된 전자가 금속 양극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X-선을 이용하여 내부구조 및 결정구조의 해석에 활용하는 장비
 - G.12 임상진단용컴퓨터단층촬영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Computed Tomography / CAT systems) : 일반 촬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신체의 단층영상을 기록하여 나타내는 장비
 - G.13 임상진단용자기공명영상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Magnetic Resonance Imaging) : 자장을 발생 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고주파를 발생시켜 신체부위에 있는 수소원자핵 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여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는 영상화장비
 - G.14 임상진단용혈관조영술(Clinical and Diagnostic Angiography Instrument) : 경동맥 혹은 척추동맥내 로 방사성 불투과 물질을 주사한 뒤, 대뇌혈 관계를 방사선 촬영하는 장비



- G.15 임상진단용 양전자/단일광자 단층촬영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Positron Emission Tomography/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 대상자에게 정맥주사 혹은 흡인을 통해 투여한 후 단층 촬영함으로써 방사성 의약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장비
- G.16 임상진단용초음파(Clinical and Diagnostic Ultrasound) : 진동주파수가 17,000 ~20,000Hz 이상으로 인체 조직과 피부 세포간에 아주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장비
- G.17 임상진단용방사선(Clinical and Diagnostic Radioactive Ray) : 방사능을 가진 원자에서 발생하는 빛인 방사선의 신체투과를 통해 세포나 유전자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종양을 파괴하는데 활용되는 장비
- G.18 임상진단용가속기(Clinical and Diagnostic Accelerator) : 암진단을 위한 단광자단층촬영(SPECT) 및 양전자단층촬영(PET)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성 의약품개발에 사용되는 장비
- G.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
- G.21 심혈관측정/진단장비(Cardiovascular Diagnostic Equipment) : 심장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홀터심전도, 혈관탄력도 및 혈관 생리검사용 장비와 디지털 영상촬영 장비
 - G.22 호흡기측정/진단장비(Respiratory Diagnostic Equipment) : 폐기능검사기구로 이용되고 주로 폐용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 G.23 뇌신경측정/진단장비(Neuro Diagnostic Equipment) : 환자의 머리 부분에 두 개의 전극을 위치시켜 뇌의 전기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비
 - G.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
- G.31 혈액검사/분석장비(Hematological Analyzer) : 혈청검사, 혈액중 효수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 G.32 체액검사/분석장비(Fluid Analyzer) : 체액 중 단백질, 글루코스의 함유량 및 RBC,



WBC 수치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G.33 소변검사/분석장비(Urinalysis Analyzer) : 요로계의 이상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내분비/대사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소변검사용 장비

G.34 유전자검사/분석장비(Gene Analyzer) : 질병 진단을 위해 특정 유전자(DNA)의 증폭에 사용하는 장비

G.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41 치과용검사장비(Dental Examination Equipment) : 치과용 현미경, X-ray 등 치과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영상진단장비

G.42 안과용검사장비(Ophthalmic Examination Equipment) : 레이저각막측정기, 각막 CT, 각막두께측정기, 비접촉 안압 측정기 등 안과용 각종 검사장비

G.43 정형외과용검사장비(Orthopedic Examination Equipment) : 골밀도 측정기, 방사선 영상진단 장비 등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진단장비

G.44 이비인후과용검사장비(Ear nose throat ENT Examination Equipment) : 청력계기, 외과용 수술현 미경, 각종 내시경, 수술기구 등 이비인후과용 진단장비

G.45 비뇨기과용검사장비(Ur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요도방광경, 절제경 등을 포함한 비뇨기과용 진단장비

G.46 수의학검사장비(Veterinary Examination Equipment) : 혈액검사용 혈액화학분석기, 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신체구조를 단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검사 장비

G.47 산부인과용검사장비(Obstetrical or Gynec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유방암 검사를 위한 X-ray, 검진대, 초음파 등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검사장비

G.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별표 2] 장비도입 심의기준(제17조 관련)

① 단독활용장비

심의 항목	심의 내용
사업목적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해당 장비의 필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가 없을 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검토 - 해당연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지 검토 - 사업계획과 장비도입 시기의 연계성이 높은지 검토 • 정부예산 지원 도입 필요 여부
장비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성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의 적정성 검토 • 과제 수행을 위해 기 구축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수행기관 또는 인근 연구 기관 기 보유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 특성상 불가피한 추가 구매 필요 여부 • 장비 특성상 추가구매 필요 여부 • 기타 추가구매 필요성 인정 여부 • 중복성 검토 적정성 여부
장비 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 후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활용도와 타기관 활용도를 함께 고려 • 단독활용 장비의 경우 활용 근거 적합성 여부 • 활용도는 낮지만 사업 수행 상 꼭 필요한 장비인지 검토 • 여러 장비(설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로서 활용도가 적정한지 검토 • 공동장비 이용가능성 및 임대장비 이용가능성
장비운영 계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운영전문가 확보 및 장비 운영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장비 특성상 전담 인력(전문가)의 필요 여부 • 장비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및 계획의 적정성 여부 • 기기 유지보수 방안의 적절성 여부 • 장비 운영 공간 확보의 적절성 여부 • 과제종료 후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장비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사양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 여부 • 연구 장비의 세부 사양 및 가격 등 제공된 장비 정보의 충실도 여부 • 장비 사양 업그레이드 필요성 있는 장비의 경우 사양 업그레이드 용이성 여부 • 국산장비 검토의 타당성 여부



② 공동활용장비

심의 항목	심의 내용
사업목적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해당 장비의 필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축 장비와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국가 산업기술 기반조성 관점에서 도입 필요성 검토 산업기술기반조성 로드맵과 적합성 검토 지역 거점 육성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 검토 정부 예산 지원 도입 필요 여부
장비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 기 보유 장비로 추가 구매의 필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문제, 일괄공정, 100% 이상의 활용률, 연구개발용 등 타기관(인근지역)의 동종장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용률 80% 이상, 장비 셋업 시간 과다, 일괄공정, 활용분야 상이, 이동 시간, 연구목적에 부족한 사양인 경우 동종장비의 전국 분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 특성상 전국에 1~2대만 설치하면 되는 장비 불인정, 특정산업의 국가(지역) 허브기관으로 일괄 장비 구축인 경우, 예상 활용률이 80% 이상인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비 양수가능성
장비의 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필요 장비의 합리적 계획 수립 여부 사용자 중심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 여부 장비 가동률 추정적 적정성 향후 자립화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여부
장비운영 계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 운영을 위한 공간과 환경(시설 및 유틸리티)의 구축여부 장비 운영 전문 확보 및 교육 계획 수립 여부 장비 유지보수 인력 및 자원 확보 계획 수립 여부
장비사양 및 가격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사양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목적 제품군 및 사용 용도에 적합한 장비 사양의 선정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사양의 선정 공정 특성상 여러 장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 여부 연구 장비의 세부 사양 및 가격 등 제공된 장비 정보의 충실도 여부 장비 사양 업그레이드 필요성 있는 장비의 경우 사양 업그레이드 용이성 여부 국산장비 검토의 타당성 여부
수요조사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조사 방법의 구체성 및 양식의 충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적과 기술성숙도 단계별 장비 수요에 대한 조사 수요조사 대상기업 응답률 및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 활용 및 사용 가능 산업군 기업의 응답 여부



[별표 3] 유휴·불용장비 양수기관 선정기준(제48조제1항 관련)

대상유형 평가항목	평가 지표
장비 적합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고유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와의 일치성 -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계성
기관의 활용능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관련 운영인력 보유 - 장비 설치 공간 확보 - 동일 또는 유사장비 운영 경험 - 장비 활용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 등
경제적 성과 /공공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활동 촉진 기여도 - 대외 공동활용을 통한 공공성 기여도 - 활용도 제고 등
향후 활용계획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합리성 -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자원 마련 계획의 타당성 - 운용 인력 유지(확충)를 위한 고용계획의 타당성 - 장비활용수익금의 활용계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목 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대상)
- 제3조(적용범위)

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

- 제4조(보안대책 수립)
- 제5조(국외유출 방지 등)
- 제6조(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
- 제7조(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 제8조(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제3장 보안 등급 분류

-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 제11조(보안등급 변경)

제4장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 제12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제5장 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

- 제14조(보안실태 점검 등)
- 제15조(보안관리 현황보고)
- 제16조(보안관리 지도감사)
- 제17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 제18조(보안사고의 보고체계)
- 제19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보 칙

- 제20조(보안관리의 위탁)
- 제22조(재검토기한)

부 칙

별 표

- [별표 1] 보안관리 조치사항
(제12조 관련)
- [서식 제1호] 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 [서식 제2호] 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수행기관용)
- [서식 제3호] 사업 보안관리 현황보고
(전담기관용)
-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 양식(예시1, 2)
- [서식 제5호] 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
(예시)
- [서식 제6호] 외국인 신상 카드 양식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9호(2014. 12. 1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 12. 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8. 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2호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73호
 개정 2013. 7.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 79호
 개정 2014. 1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49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 제3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

제4조(보안대책 수립)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②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보안 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외유출 방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과제명, 총괄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제6조(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장관은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 담당부서의 과장 및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담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연구보안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수행기관에서는 수행기관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
4.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



5. 그밖에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①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보안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
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3장 보안 등급 분류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기술혁신사업 과제에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 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라.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마. 그 밖에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II·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 I·II·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등급 분류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안등급이 분류될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총괄 책임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심의한 보안등급에 대해 제9조제1호 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 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

제11조(보안등급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이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제12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9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는 제9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1항제12호에 에 따라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공통운영요령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과제의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보안실태 점검 등) ①장관은 사업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관리 현황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관리 지도감사)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수시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해 보안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매년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3.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변조, 손괴 또는 파괴
4.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5.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6.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장관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제18조(보안사고의 보고체계)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과 총괄책임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수행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8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공통 운영요령 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 칙

제20조(보안관리의 위탁)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보안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 12. 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을 공포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폐지한다.

1.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호, 2008.4.15 개정)
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2007.11.12 개정)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2008.2.1 제정)

부 칙 (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3. 7.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2.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 【서식 제1호】 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 【서식 제2호】 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수행기관용)
- 【서식 제3호】 사업 보안관리 현황보고(전담기관용)
-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 양식(예시1, 2)
- 【서식 제5호】 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예시)
- 【서식 제6호】 외국인 신상 카드 양식(예시)



【별표 1】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1. 보안관리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총괄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요령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개정	○	
모든 과제	2. 수행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수행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담당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 과제	4.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수행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총괄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 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수행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총괄 책임자
모든 과제	1. 수행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과제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 과제	3. 사업 수행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총괄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사업수행 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모든 과제	5. 사업수행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참여기관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사업수행 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총괄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운영	○	
모든 과제	3. 수행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담당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총괄 책임자
모든 과제	1. 수행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 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담당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 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담당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서식 제2호】

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기관명 :		□기간 : 20 . 1. 1 ~ 20 .12.31 (1년)	

①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건수	주요사항	비고

②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산업기술융합원천, 글로벌전문사업 등)
-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산업기술융합원천 중 신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사업 등)
-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 중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보안등급으로 기재



③ 보안과제 지정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총괄책임자	수행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지정사유
			'13년도	'14년도		
			'13..~ '14..	'14..~ '15..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④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외국기업·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회 실시		
⑤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규정 마련 여부	(Y / N)		관련 규정, 조항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Y / N)		관련 대책 별첨

⑤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총괄책임자	수행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13년도	'14년도		
			'13..~ '14..	'14..~ '15..		



6 과제 보안사고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총괄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7 기타 건의사항

위와 같이 본 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보고합니다.

20

보안관리 부서장 : (인)

수행기관장 : (직인)

전담기관장 귀하



【서식 제3호】

사업 보안관리 현황 보고 (전담기관용)

1. 보안관리 일반 현황

과제현황

관리사업명	과제수			보안등급 분류		
	신규	계속	계	보안과제	일반과제	미분류
사업 1						
사업 2						
합 계						

보안관리 일반현황(수행기관)

관리사업명	규정		보안담당자		연구보안심의회		보안교육	
	유	무	지정	미지정	운영	미운영	실시	미실시
사업 1								
사업 2								
합 계								

보안관련 실태조사 및 사고발생 현황 등

관리사업명	수행기관 보안점검(실태조사)			보안사고		
	과제수	지적건수	주요내용	발생건수	주요내용	조치내용
사업 1						
사업 2						
합 계						

※ 보안사고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별도 보고



보안관련 실태조사 실시 현황

가. 외국기관 참여현황

관리사업명	구분 (참여/용역)	과제명	참여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사업 1					
사업 2					
합 계					

나. 외국인 참여연황

관리사업명	구분	과제명	성명(국적)	참여형태	외국인번호 등 (관리번호)
사업 1					
사업 2					
합 계					

※ 구분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참여형태 :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 (수행기관용) - 예시1

본인은 “_____” 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수행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총괄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 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명 : (인)

200 . . .

○○○○○○○○○ 귀하



보안서약서 (전담기관용) - 예시2

본인은 산업기술혁신사업(세부사업 :)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2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수행관리, 과제종료 이후의 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전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한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보안과제의 성과 등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보안과제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즉시 인계절차를 이행하며, 제1항 및 제 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징계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인 소속 :
성명 : (인)

○○○○○○○○○ 귀하



【서식 제5호】

보안과제 현황관리 - 예시

과제정보

사업명		사업연도	
과제명		과제번호	
기관명(주관)		총괄책임자	
보안등급	<input type="checkbox"/> 보안과제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제		

외국기관 참여현황

구분	기관명	수행기간	사업비 (단위 : 천원)	비고
참여/응역				

외국인 참여현황

구분	성명	참여형태	국적	외국인번호 등 (관리번호)	참여과제명	비고

※ 구분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참여형태 :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 외국인 참여의 경우 외국인 신상카드(참고)를 작성하여 관리

외국인 접촉 현황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대상/국적)	접촉일	접촉사유
홍길동			



외부기관 파견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사유	신원조회여부 및 결과
홍길동		(주)000			

핵심인력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핵심인력 분류사유	비고

연구개발결과물 외부제공 현황

결과물	배포처	배포부수	배포일	비고

※ 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이나, 일반과제의 경우에도 현황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



【서식 제6호】

외국인 신상카드 - 예시

인적사항	성 명	영 문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한 글		종 교	
		가 명		외국어능력	
인적사항	국 적			여권번호	
	본 국	주 소			
		소 속			
	국 내	숙 소			
근무부서			전화번호		
고용관계	유치기간			근무형태	
	유치목적				
연구분야					
신 장	cm	체 중	kg	혈액형	형
두발색갈		피부색		취 미	
주요 학력 경력	기 간	학 교 및 직 장 명		소 재 지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국내출/ 입항현황	체류기간(부터 ~ 까지)	목 적			체류지
기타사항	책임자 성명 : 직위 : 전화 :		담당자 성명 : 직위 : 전화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목 차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대상)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용어의 정의)
- 제5조(부정행위의 범위)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제22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제23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제5장 행정사항

- 제24조(재검토기한)

제2장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역할과 책임 부칙

- 제6조(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 제7조(전담기관의 권한과 역할)
- 제8조(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 제9조(제보의 방법 및 권리 보호)
- 제10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 제13조(진실성 검증 원칙)
-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 제15조(예비조사)
- 제16조(본조사)
- 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제19조(판정 및 통보)
- 제20조(이의제기 및 재조사)
- 제21조(조사결과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3. 7. 1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8.12.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3호
개정 2009. 8.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1. 10.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90호
개정 2013. 7.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80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요령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8.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부정행위의 범위) ①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7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6조(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①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
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4.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
5.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수행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본 요령을 자체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6. 결과통보 이후의 처리절차

③자체규정은 사업 외에도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권한과 역할)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수행기관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3. 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4. 연구협약 및 관련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5.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1. 수행기관이 보고한 예비조사결과, 판정결과, 이의신청 처리결과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2. 수행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3.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4. 수행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 5. 기타 전담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 ③전담기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해야 한다.
- ④전담기관은 부정행위의 규모·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 및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 ⑤전담기관은 제7조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관리는 감사부서가 담당하며, 필요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 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 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
 - 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제9조(제보의 방법 및 권리 보호) ①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접수한 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보된 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부정



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접수기관 및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③ 조사대상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①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전담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③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④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수행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나,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본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부정행위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다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수행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통보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의 장은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 ③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결과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6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제1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⑤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 구성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조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절차를 준용하여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조사대상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판정 및 통보) ①조사기관의 장은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6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 및 변론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이의제기 및 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내지 제19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과 조사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담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2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7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4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3.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지원
4.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5.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
6.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⑤부정행위자 조치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적절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제4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조사기관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관계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8.12.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을 시행한 날로부터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지침(2007.8.28일 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09. 8.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IV. 지 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목 차

1. 목적
2. 적용대상
3. 지침의 활용
4. 주요 용어 정의
 -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 나. 협약 관련 용어
 - 다. 평가 관련 용어
5. 추진 절차
 - 가.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 나.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 다. 품목지정 공모 사업의 경우
 - 라.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6. 추진 체계
 - 가. 기획위원회
 - 나. 평가위원회
 - 다. 전문위원회
 - 라. 전담기관
 - 마. 주관기관
 - 바. 참여기관
 - 사. 참여기업
 - 아. 실시기관
 - 자. 총괄책임자
 - 차. 기타
7. 지원과제의 발굴 및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가. 대형선도과제의 발굴
 - 나. 중장기 지원과제의 발굴
 - 다. 단기·소형 지원과제의 발굴
 - 라.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8.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 가. 공고
 - 나. 신청기관 제출 서류
 - 다. 접수
9. 기술료율
10. 신규평가
 - 가. 개념평가
 - 나. 사전 검토
 - 다. 신청과제 평가 계획 수립
 - 라. 신청과제 평가
 - 마. 우대 및 감점 기준
 - 바.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보고
 - 사. 투자심사(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 한함)
 - 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자.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 차. 선정 결과 통보
11. 기술개발사업비 산정 및 조정
12. 협약
 - 가. 협약의 체결



- 나. 협약의 변경
- 다. 협약체결의 중지
- 라. 협약의 해약

- 다. 참여제한
- 라. 출연금 환수
- 마. 행정행위 등

13. 출연금 지급

23.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14. 기술개발사업비 관리 및 사용

24. 기타 사항

15. 진도점검

- 가. 사업홍보
- 나. 우수연구자 포상
- 다. 표준서식
- 라. 재검토 기한

16.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 가. 연차 평가
- 나. 단계 평가

부 칙

17. 최종 평가

- 가. 최종보고서 제출
- 나. 최종 평가

18.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20. 기술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21. 기술개발결과 활용보고 및 성과활용 평가

- 가.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 나. 성과활용평가

22.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 가. 문제과제의 처리
- 나. 제재등급 및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1호(2014. 12. 16.)

제정	2008. 12. 29.
개정	2009. 2. 20.
개정	2010. 4. 1.
개정	2012. 3. 5.
개정	2012. 7. 12.
개정	2012. 10. 23.
개정	2013. 7. 15.
개정	2014. 4. 22.
개정	2014. 12. 16.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1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가.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 나.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지침의 활용

- 가.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용어 정의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 1)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 2)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 3)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 4)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 5) “공동주관기관”라 함은 공동주관과제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에 복수의 주관기관을 말한다.



- 6)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7) “기획위원회”라 함은 PD가 없는 기술분야의 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 8) “전문위원회”라 함은 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요령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9) “목표검증단”이라 함은 PD가 기획한 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말한다.
- 10)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희·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나. 협약 관련 용어

- 1) “일괄 협약”이라 함은 총 기술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2) “단계 협약”이라 함은 총 기술개발기간을 2년 내지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3) “연차별 협약”이라 함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4)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 5) “협약기간”이라 함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 6) “연차별 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다. 평가 관련 용어

- 1)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2)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3)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 4)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5)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신규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 6)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 7) “투자심사”라 함은 신규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 적격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한다.
- 8) “진도점검”이라 함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 9) “연차평가”라 함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 10) “특별평가”라 함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 11)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 12) “최종평가”라 함은 총 수행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 13)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14) “대형선도과제”라 함은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며, 융·복합을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 15) “신청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 16) “투자적격대상”이라 함은 신규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계약서가 제출된 과제를 말한다.
- 17)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 18) “완료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 19)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 20)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 21) “선완료과제”라 함은 사업 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 계획서상 총 수행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과제를 말한다.
- 22) “조기종료”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 23) “종합평점”이라 함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 24) “기지원”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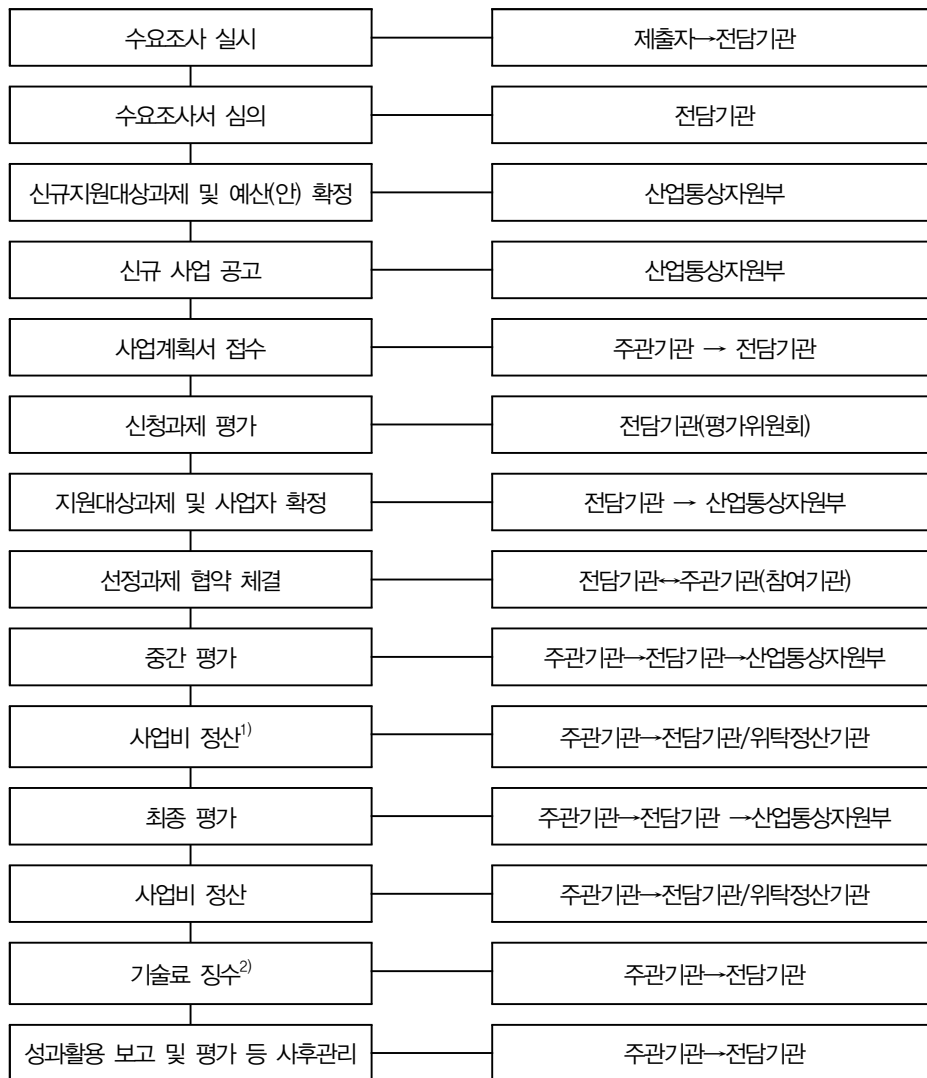
- 25) “기개발”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 26)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 27) 투자심사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함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 사)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 아) 「벤처특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 차)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 28)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가) 42개월이 되는 날
 - 나) 신규평가 결과에 의한 수행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
 - 다) 조기종료로 평가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 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날



5. 추진 절차

가.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① 단기과제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② 중장기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과제 도출	MD/기획위원회/PD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MD/기획위원회/PD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¹⁾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 ²⁾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³⁾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⁴⁾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4)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③ 대형선도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대형선도과제 후보 도출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후보 확정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과제 기획 수행(기술, 시장, 특허, 표준 분석)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1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전담기관(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협약 및 과제기획수행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1단계 결과평가 및 2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점검/연차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결과평가 및 3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3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점검/연차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¹⁾	주관기관 → 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나.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¹⁾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 ²⁾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³⁾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⁴⁾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4)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다. 품목지정 공모 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후보품목 발굴	MD/기획위원회/PD
후보목품에 대한 의견수렴 (인터넷 공시 등)	전담기관
지원 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¹⁾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 ²⁾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³⁾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⁴⁾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4)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라.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담기관
수요조사 심의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기술성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외부 민간 투자심사	투자기관협의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계약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사후관리 지원계약 이행점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투자기관협의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6. 추진 체계

가. 기획위원회

- 1) PD가 도입되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2) 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특허/경제성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회

- 1)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가) 요령 제7조에 따라 평가 대상과제의 기술 중분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① 경제·시장전문가 1명 이상
 - ②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및 단계) 중 2명 이상
 - ③ 책임평가위원
 - ④ 10-라.신청과제 평가의 경우 개념평가 위원중 2명 이상
- 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다)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련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 라) 평가위원회는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전담기관의 장은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전담기관의 장은 중·대형과제의 평가 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전문위원회

1) 장관은 요령 제44조의 제재 및 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가) 전문위원회는 평가단 위원,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나) 심의 대상

- ①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 ②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 ③ 기술개발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특별평가 사항의 경우
- ④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 ⑤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다) 전문위원회는 상기 나) 사항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 다음날 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라. 전담기관

- 1) 전담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장관은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요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주관기관

1) 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주관기관의 자격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기관의 범위 내에서 장관이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능(권한과 책임)

- 가) 요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나)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다른 유형

- 가)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및 공동주관기관의 자격, 기능은 주관기관의 자격, 기능과 같다.
- 나) 총괄주관기관의 추가 기능
 - ① 기능(권한과 책임)
 - ㉠ 전담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참여기관과의 협약 체결
 - ㉡ 기술개발사업의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 책임 등
 -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총괄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7명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
- ㉡ 전담기관 담당 부서장
- ㉢ 총괄주관책임자
- ㉣ 세부주관책임자
- ㉤ 참여기관책임자
- ㉥ 외부기관 소속 산·학·연 전문가 등
-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 차기년도, 차기단계 세부과제의 선정 추천
 - ㉡ 기술개발 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한 검토
 - ㉢ 기술개발 주요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 ㉣ 기술개발 추진결과에 대한 검토
 - ㉤ 기타 총괄과제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다) 세부주관기관의 추가 기능
 - ㉠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참여기관과의 협약 체결
 - ㉡ 총괄주관기관에 보고서 제출 등

바. 참여기관

참여기관은 요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사. 참여기업

- 1) 참여기업은 요령 제25조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참여기업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아. 실시기관

- 1) 해당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요령 제37조의 2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자. 총괄책임자

-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은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 2) 총괄책임자는 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3) 총괄책임자의 다른 유형
 - 가) 총괄주관책임자
 - ① 자격
 - ㉠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 ㉡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조정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에 전담할 수 있는 자
 - ② 기능(권한과 책임)
 - ㉠ 총괄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 ㉢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
 - 나) 세부주관책임자
 - ①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은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 ② 기능(권한과 책임)
 - ㉠ 세부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주관책임자에게 보고 등

차.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요령에 따른다.



7. 지원과제의 발굴 및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가. 대형선도과제의 발굴

1) 대형선도과제 후보 발굴

MD와 PD는 글로벌 시장 성장 잠재력, 국제표준 주도 가능성, 민간 투자·생산·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발굴하여,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형선도과제 후보 확정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심의하여 확정한다.

3) 대형선도과제 기획

MD는 PD와 함께 확정된 대형선도 후보 과제의 기획을 추진하며, 위 기획에 필요한 사항은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나. 중장기 지원과제의 발굴

1) 기술수요조사

가) 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정기 또는 상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나)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 ②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2) 기획대상 후보과제의 발굴

MD/PD/기획위원회는 산업기술 R&BD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 기술수요조사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후보과제의 중복성 및 유사과제의 통·폐합 여부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3) 기획대상과제의 확정

MD/PD/기획위원회는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후보과제 중에서



기술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단, 사업간 중복 및 연계 검토가 필요시 산업 R&D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4) 과제기획의 수행

MD/PD/기획위원회는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디자인 동향 조사(표준화·디자인 동향조사는 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디자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5) 과제기획 검증 및 우선순위 도출

가) 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과제기획 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나) 목표검증단의 과제기획 목표검증

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PD의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과제별 목표 검토 및 검증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목표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 MD/PD/기획위원회는 가)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목표검증단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라) MD/PD/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6) 지원대상과제의 심의·확정

가)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MD/PD/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목표검증단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확정한다.

나)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MD/PD/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에 검토 및 조정하게 할 수 있다.

7) 장관은 고위험도의 미래형 창의·혁신 R&D의 경우, 품목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본 기획을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기획(연구)을 실시할 수 있다.

8)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1)부터 7)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부터 7)에 따른 과제기획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 단기·소형 지원과제의 발굴

- 1) 단기·소형 과제의 기술수요조사 또는 과제기획은 전담기관이 수행 한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단기·소형 과제의 기술수요조사 또는 과제기획을 수행할 때 상기 나.-1)부터 7)에 해당하는 절차를 준용하거나, 사업별 특성에 따른 별도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1)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 사업의 경우
 - 가) 장관은 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된 경우, 요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나)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 가) 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신규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하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나)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요령 제1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3)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장관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행과제 및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8.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가. 공고

- 1) 장관은 요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산업기술R&D 종합정보 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공고시 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 한다.

나. 신청기관 제출 서류

신청기관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접수

신청기관은 10.-가에 따라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준비 후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9. 기술료율

가.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술료 징수 여부, 징수 방식 및 기술료율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이하 ‘기술료 통합요령’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상세 사항은 신규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10. 신규평가

가. 개념평가

- 1) 전담기관의 장은 개념계획서를 제출받은 과제에 한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한다.
- 2) 개념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10.-다의 신청과제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에 포함하되 필요시 별도로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나.-1) 및 나.-2)-가) 내지 마)를 준용하여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전검토 한다.
- 4) 전담기관의 장은 서면평가의 형태로 운영하며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개념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을 선정토록 한다.
- 5)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
 - 가)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점수로 하며 신청 개념계획서별 종합의견서를 작성 한다.
 - 나)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한다.
 - 다)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6)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전 검토

- 1) 제출서류 검토
 - 가)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2)-마)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①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다.
- ②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④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4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 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 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의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 의견이 “한정”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 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바) 과제 참여율 등

- ①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율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가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참여연구원(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고유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게 제외할 수 있다.
- ④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고유 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⑤ 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3) 우대 및 감점 기준 반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나)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면담

전담기관의 장은 검토에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 또는 방문 면담을 할 수 있다.

다. 신청과제 평가 계획 수립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개념평가 계획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신규평가 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7.-라.에 의거해서 장관에게 보고한 사업별 시행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심의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신규평가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신청과제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 계획에 따라 “서면 평가”, “발표 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혼합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1박 2일 합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는 사전 서면검토 결과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 서면검토 결과에 대한 보완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과제를 검토하고, 종합토론을 실시한 후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

- 가)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 하여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 나) P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위원회에 평가 전에 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해야 한다.
- 다)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한다.
- 라)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결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 마)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마. 우대 및 감점 기준

- 1)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대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른 우대 기준은 사업 시행 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다)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라)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 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마)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바)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 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아)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자)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차)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②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카)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구체적인 포상명은 사업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 2)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 같이 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여부는 사업 시행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 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 나)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마)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시행 공고시 안내한 우대 및 감점 기준별 점수를 평가 시 평가 점수에 부여한다.

바.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보고

-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 다음날 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투자심사(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 한함)

-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결과 지원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2)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투자심사를 의뢰 받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투자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3) 주관기관의 장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다음의 가)부터 다)를 충족하는 투자계약을 제출한 주관기관을 투자적격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가) 투자심사대상이 투자기관협의회 회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주체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 ② 투자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 ③ 투자계약을 체결한 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참여기업인 경우
 - ④ 전환사채의 표면금리가 1%를 초과하는 투자계약
 - ⑤ 동 지침 4.다.22)의 가)부터 차)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이 되는 투자계약
 - ⑥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 나)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투자계약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 ① 신주인수투자계약
 - ② 전환사채인수투자계약
 - ③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계약
 - 다) 상기 가),나)에 의한 투자금액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단,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단, 지원우대과제의 경우 2/3)을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되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인정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 ① 체결된 총 투자금액이 총 출연금의 1/2 이상
 - ② 상기 나) ①의 신주인수투자계약 체결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 발행 주식수의 1/4이상인 경우에는, 기 발행 주식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출연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다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전환가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산함)
 - ③ 체결된 총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 5)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절차 및 투자 적격대상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요령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의 평가결과 보고에 대해 조정·심의하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생략 할 수 있다.

자.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 1)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이때,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다.
- 2)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차. 선정 결과 통보

- 1)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선정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 3)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기술개발사업비 산정 및 조정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12. 협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 준비

- 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출연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이 가능하다.
- 다) 사업비요령 제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 포함)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지급받은 현금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라) 창업초기 중소기업(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 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은 협약 전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사업계획서 수정
 - 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바)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가)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아래 협약 방식중 하나를 적용하여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일괄 또는 단계 협약할 수 있다.

- ①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는 서면협약
- ②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지 않는 서면협약
- ③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는 전자협약
- ④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지 않는 전자협약

나) 일괄 협약 과제중 계속과제는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만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라)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서 사본을 투자기관 협의회의 장에게 제출한다.

3) 협약기간

가)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통보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기술개발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과제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기술개발종료일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협약 변경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을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변경 절차 및 기준

- 가)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나) 협약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주관기관의 변경
 - ② 최종 목표의 변경
 - ③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요령 제15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 ④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 ⑤ 당초 사업계획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의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포함)
 - ⑥ 과제수행기간 변경
 - ⑦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⑧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 ⑪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 증액할 경우
- 다)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변경 및 최종 목표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라)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인수합병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마) 과제 수행기간의 변경 중 연차별 수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바)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사)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전담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 ② 참여연구원(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 ③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 아)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 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 자)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사)에 따라 변경된 참여연구원이 요령 제44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 차)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제출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 가입 필수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참여기관 동의서 ※ 제출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주관주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 가입 및 사업체정보 입력필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견적서 및 카타로그 포함)
과제 수행 기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증액 또는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5)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변경

- 가)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변경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할 수 있다. 이때, 협약을 취소할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정을 받아야 한다.

6) 투자계약 변경 및 양도(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 한함)

- 가)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코자 하는 투자기관협의회 회원과 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에 투자기관협의회 의 장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나)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이에 대해 “지침” 12.-라.-1)-나)의 협약해약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 다) 투자계약이 양도 또는 변경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양도 또는 변경된 투자계약의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 가)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 나)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다)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라)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마)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10.-나.-2)신청자격 검토” 중 다), 라) ,마)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협약 대상 과제가 “10.-나.-2)신청자격 검토” 중 다), 마)에 해당하는 경우
 - 바) 해당과제 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2) 상기 1)-나)부터 바)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1)-가)부터 사)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라. 협약의 해약

- 1)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가) 요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주관기관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해온 경우
- ②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 ③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투자기관협의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양도된 경우
 - ㉡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 ㉢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는 경우

2) 과제의 중간(연차·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평가된 과제는 평가 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에 갈음한다.

13. 출연금 지급

가.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제1항의 출연금을 교부함에 있어 수행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하여 또는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4. 기술개발사업비 관리 및 사용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15. 진도점검

- 가. 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과제, 대형선도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진도점검 또는 실적평가를 통해 녹색, 황색, 적색, 조기 종료로 구분하는 신호등 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녹색 : 점검 시점까지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대비 기술개발 목표를 적정히 달성하여 해당연도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며,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 2) 황색 : 점검 시점까지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대비 기술개발 목표 중 일부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 등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상태가 미비한 경우
 - 3) 적색 : 점검 시점까지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대비 기술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상당히 미흡한 경우, 부적정 사업비 사용에 대한 경고조치 후 유사 사례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연구비 유용·횡령 등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 4)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 5)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 6)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라. 전담기관의 장은 신호등 평가결과가 녹색 또는 연속으로 황색이 아닌 경우와 적색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수행토록 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은 신호등 평가결과가 적색 또는 연속으로 황색인 경우에는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바. 신호등 평가 중 실적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사.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 한다.

아. 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6.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가. 연차 평가

- 1)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2)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발표 평가 및 토론 평가 포함)·서면평가·1박2일 합숙평가를 실시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신호등 평가제도를 도입한 사업의 경우 실적평가를 연차평가로 본다.
- 4)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시 차기연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은 동 지침 10-가-2)를 적용한다.
- 5)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과 투자기관협의회 의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고, '계속' 판정 받은 과제에 한해 장관에게 보고한다.
 - 가) 계속 : 연차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나) 중단(성실)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다) 중단(불성실) :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 라)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 마)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 바)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단, 1차년도 평가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6)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7)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아래를 따른다.



- 가)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 초과인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8)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9)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10) 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가 ‘계속’이 아닌 과제는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 11)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 상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2)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13)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 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차년도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14)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인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15) 상기 4)에 의해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첨부는 1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 나) 총괄책임자는 최종보고서요약을 작성한 후 그 출력물 1부 및 최종보고서 전체 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기술료에 대한 징수, 사용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 16)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는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사후 관리지원계약의 이행에 대해 연차별 2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점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17) 연차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단계 평가

- 1) 단계보고서 및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 가)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단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①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 단계보고서, 차기단계 과제기획보고서, 차기단계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기술개발 내용 및 세부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는 차기단계 과제기획 결과에 대하여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기단계 수행과제를 선정한다.
- 나)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 자격은 동 지침 10.-가.-2)를 적용한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신호등 평가제도를 도입한 사업의 경우 해당단계의 마지막 실적평가를 단계평가로 본다.
 - 4)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수행 결과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가)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발표 평가 및 토론 평가 포함)·서면평가·1박2일 합숙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나) 총괄책임자는 전담기관이 평가할 경우에 해당 단계 계획 대비 실적과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여야 한다.
 - 다) 차기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과제는 동 지침 10.신규평가를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개발목표에 부합되는 과제에 한해 신규과제로 지원할 수 있다.
 - 라) 선완료과제는 동 지침 17.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 마) 평가위원회를 통한 단계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5)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에 대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가) 계속 : 단계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나)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다) 중단(불성실) : 과제의 해당단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 라)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 마)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 바)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 6)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성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7)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래를 따른다.
 - 가)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 초과인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8) 차기단계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과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는 동 지침 10.-다.에 따른다.
- 9)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 “조기종료”인 경우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10)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11) 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12)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 상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14)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다음 단계의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15)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 “중단”인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16) 상기 5)에 의해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는 동 지침 16.-가.-15)에 따라 처리한다.
- 17) 차기단계 기술개발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 18) 단계평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7. 최종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나. 최종 평가

- 1)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진도점검을 실시한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가) 기술료 비징수 과제인 경우에는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최종평가는 기술개발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정도 및 기술개발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 나) 상기 가)에 의한 기술개발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정기업에 의한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과 사전협의 후 기술료 징수 과제로 간주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필요 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가) 총괄책임자는 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 나)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 다)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4)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한다.
 - 가) 혁신성과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 나)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 다) 성실수행 :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
 - 라) 불성실수행 :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 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 5)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 가)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는 “혁신성과”, 90점 미만 70점 이상은 “보통”, 70점 미만 60점 이상은 “성실수행”으로 구분하고, 60점 미만의 과제는 “불성실수행”으로 구분한다.



- 6) 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7)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 상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8)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9)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 의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10)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된 과제는 동 지침 24.-나.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11)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불성실수행”인 과제에 대해 “불성실수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8.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1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 가.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는 연차·단계 또는 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말한다. 이때, 최종평가를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할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는 기술성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를 말한다.
- 나.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술개발이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 다.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적용한다.

20. 기술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 가.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유지 및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다. 전담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기술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라.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령 제44조제11항에 따라 사업의 중단(성실·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 수행 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1. 기술개발결과 활용보고 및 성과활용 평가

가.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 1) 연차평가 또는 단계 평가에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로 평가된 과제 및 최종평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1월에 전담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나. 성과활용평가

- 1)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2년 혹은 3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1)에 의한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원한 기술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2.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가. 문제과제의 처리

-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배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정밀실태조사 후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민간 투자 관련 사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상기 1)항 및 2)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는 단계평가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 4)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처리 시 참조할 수 있다.

나. 제재등급 및 대상

- 1)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장관이 확정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요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4)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 5)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상기 2)의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6)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다. 참여제한

- 1)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민간 투자를 유치한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는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해당 투자기관에 대하여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신규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라. 출연금 환수

- 1) 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 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 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집행시점 건별로 출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민간부담 현금에 대한 지분에 대한 잔액을 제외한 출연금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수행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아래와 같이 환수할 출연금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가)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 나)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 4)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5) 기술료 미납과제의 경우 전체기술료 중 기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잔액기술료를 환수한다.
- 6)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9조 및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 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7)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별표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가)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 우량
 - 나)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 양호
 - 다)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경우 : 중급



- 라)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이상 경우 : 열위
- 마)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미만인 경우 : 불량

8) 전담기관의 장은 미납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행정행위 등

- 1) 중단,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3.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장비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24. 기타 사항

가. 사업홍보

- 1)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 발표 시 지원기관(산업통상자원부) 및 과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나. 우수연구자 포상

- 1) “혁신성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에게 우대배점을 부여한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기술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3) 장관은 요령 제46조제3항에 의거하여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후속과제 지원 등 적절히 보상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 표준서식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 12. 29]

1. 동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기술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3. 동 지침 2.(지원 대상) 각 호 사업으로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의 기술개발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경우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사업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도 “단계·최종평가시의 보고서 제출” 및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절차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나.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정산시 적용하는 집행기준은 협약 당시의 해당 사업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비 집행기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4. 동 지침 9.(기술개발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는 2009년도 신규 및 단계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2. 20]

1. 동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기술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3. 동 지침 2.(지원 대상) 각 호 사업으로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의 기술개발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경우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사업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도 “단계·최종평가시의 보고서 제출” 및 “기술개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절차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나.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정산시 적용하는 집행기준은 협약 당시의 해당 사업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비 집행기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4. 동 지침 9.(기술개발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는 2009년도 신규 및 단계과제부터 적용한다.

5.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공통요령 제24조(협약의



협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3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09년 12월 31일까지 협약 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0. 4. 1]

1. 동 지침은 2010년 4월 1일부터 기술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공통요령 제26조(협약의 협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1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1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2. 3. 5.]

1. 동 지침은 201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요령 제29조(협약의 협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2. 7. 12.]

1. 동 지침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2년 7월 12일에 개정된 지식경제부 고시 [2012-170]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칙에서 그 시행 시점을 달리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칙의 시행시점을 따른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요령 제29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23.]

1. 동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요령 제29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 7. 15.]

1. 동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부담금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로서 시행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과제에 한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할 것을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로서 통장 사본 등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대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후 1개월까지 입금할 것을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로 그 증빙서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만약 납부 협약일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요령 제29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 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14. 4. 22.]

1. 동 지침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0.라.1), 16.가.5),9)의 개정 사항은 본 지침 고시일로 부터 적용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4. 12. 16.]

1. 동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시행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과제에 한하여, 민간부담금 현금을 부담하는 참여기업은 아래의 협약서 제출로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
 - 나. 대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
4. 10.-마-1)가), 라), 마), 사), 아), 자)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목 차

1. 목적
 - 나. 추진체계
 - 다. 추진절차
2. 적용대상
3. 지침의 활용
4. 용어 정의
 -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 나. 평가 관련 용어
 - 다. 협약 관련 용어
 - 라. 보고서 관련 용어
5. 운영 체계
 - 가. 사업별 심의위원회
 - 나.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 다. 기획위원회
 - 라. 평가위원회
 - 마. 전문위원회
 - 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사. 장비심의위원회
 - 아. 운영위원회
 - 자. 전담기관
 - 차. 장비전문기관
 - 카. 주관기관
 - 타. 참여기관
 - 파. 결과활용기관
 - 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6. 추진 체계 및 절차
 - 가. 개요
7. 지원대상 과제의 발굴
 - 가. 수요조사
 - 나. 연구기획
 - 다. 지원대상 분야 발굴
8.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 가.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나.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 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라. 사업계획서 접수
 - 마.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9. 기술료율
10. 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 나. 신규 평가계획 수립
 - 다. 신청과제 평가
 -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 마.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보고
 - 바.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 아. 사업자 확정 결과 통보
 - 자. 상세기획 및 본평가
11. 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



12. 협약

- 가. 협약당사자
- 나. 협약의 체결
- 다. 협약의 변경
- 라. 협약체결의 중지
- 마. 협약의 해약

13. 출연금 지급

14. 사업비 관리 및 사용

15. 진도점검

16.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 가. 연차평가
- 나. 단계평가

17. 최종 평가

- 가. 최종보고서 제출
- 나. 최종평가 실시

18.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19.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 가. 수익금의 관리
- 나. 수익금의 사용
- 다. 수익금 사용현황 보고 등

20.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21. 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22. 성과활용의 보고

23.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 가. 문제과제의 처리
- 나. 제재등급 및 대상
- 다. 참여제한
- 라. 출연금 환수
- 마. 행정행위 등

24 연구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25. 연계운영

- 가. 목적
- 나. 구성 및 운영
- 다. 결과보고

26. 기타사항

- 가. 보안 및 비밀 준수
- 나. 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 다. 사업홍보
- 라. 표준서식
- 마. 재검토 기한
- 바. 기타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5호(2014. 05. 01.)

제정 2008. 12. 29.
 전부개정 2012. 12. 26.
 개정 2013. 8. 1.
 개정 2014. 5. 1.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2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적용한다.

- ① 산업기술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② 연구시설·장비, 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 ③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 ④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조성
- ⑤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 ⑥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나.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지침의 활용

- 가. 장관은 2.-나.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장관은 2.-나.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용어 정의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 1) “사업별 심의위원회”란 요령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신규, 계속과제에 대하여 지원분야 및 사전연구기획 대상과제의 조정·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2) “기획위원회”란 요령 제18조에 따라 과제기획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 3) “평가위원회”란 요령 제7조에 따라 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 평가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4) “재평가위원회”란 과제의 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에 관한 주관(신청)기관의 장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재심의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5) “전문위원회”란 과제 수행과정에서의 문제과제, 과제 종료 후 기술료 및 정산금·환수금 미납, 사업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과제의 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6)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란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7)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전문기관의 장이 3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 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희·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8)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의 기획, 도입, 구매, 이용, 관리, 처분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9) “운영위원회”란 해당과제의 수행방향, 사업내용, 사업비, 참여기관,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등 해당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10) “주무과”란 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11) “소관과”란 각 산업분야의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12) “총괄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 13) “세부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 14) “총괄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 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 15) “세부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 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 16) “참여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7) “결과활용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한다.

나. 평가 관련 용어

- 1) “자유공모(일반형)”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 2) “자유공모(기획형)”란 수행기관에 대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지원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수행과제의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 3) “신규평가”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 4) “예비평가”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서 신청 받은 예비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상세기획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 5) “본평가”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서 상세기획 완료 후 제출 받은 기획보고서(사업계획서 포함)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 6) “진도점검”이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 7) “연차평가”란 해당 사업연도 과제수행 결과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 8)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 결과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 9) “특별평가”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및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 10) “최종평가”란 총수행기간의 과제수행 결과(최종보고서, 결과물 등)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 11) “신청과제”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 12) “신규과제”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 13) “완료과제”란 총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 14) “총괄과제”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 15) “세부과제”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 16) “선완료과제”란 사업 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 계획서상 총수행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과제를 말한다.
- 17) “조기종료”란 총수행기간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 18) “종합평점”이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 19) “기 지원”이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하여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 20) “기 개발”이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 21) “책임평가위원”이란 선정된 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다. 협약 관련 용어

- 1) “일괄협약”이란 총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2) “단계협약”이란 총수행기간을 2년 내지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3) “연차별 협약”이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4) “협약기간”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 5) “성과활용기간”이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6) “연차별 정산”이란 해당 사업연도 단위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 보고서 관련 용어

- 1) “예비사업계획서”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서 신청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포함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 2) “진도실적보고서”란 요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진도점검 시점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3) “연차보고서”란 요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해당 사업연도 사업성과 보고서를 말한다.
- 4) “단계보고서”란 요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해당단계 사업성과 보고서를 말한다.



- 5)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란 요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 6) “최종보고서”란 요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최종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총수행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7) “성과활용현황보고서”란 요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기간에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운영 체계

가. 사업별 심의위원회

1) 기능

- 가)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2) 구성 및 운영

- 가) 심의위원회는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실·국장급),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다)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라)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1) 기능

가) 장관은 지역에서 차기년도 예산반영을 목적으로 제기된 기반조성사업으로 총수행 기간내 국비지원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① 차기년도 기반조성사업의 투자 방향 및 전략 검토
- ② 실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 ③ 신규사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산업 정책 적합성 검토
- ④ 신규추진이 타당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 순위 결정
- ⑤ 신규사업의 차기년도 일반회계 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의 반영 결정 등

2) 구성 및 운영

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산업기술기반팀장 및 지역경제총괄과장 등)를 포함해 산업기술기반조성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나) 장관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사업별 소관과에서 기획된 사업의 적정성, 구체성, 실행능력 등의 심사를 위하여 전담기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실무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간사(전담기관 담당부서장)를 포함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한다.

라) 장관은 심의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사업별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장관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다. 기획위원회

1) 장관은 요령 제18조에 따른 과제기획을 실시할 때에는 전담기관에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시장 및 산업현황 분석 등을 통해 과제기획을 추진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 2) 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사업담당자로 한다.
- 3) 기획위원회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심의대상인 신규사업의 소관과의 의뢰가 있으면 그 신규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회

1) 기능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구성 및 운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별표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평가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요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① 해외전문가
- ② 경제성 및 사업성평가 전문가
- ③ 지적재산권 전문가
- ④ 인문사회 분야 등 비기술계 전문가
- ⑤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및 단계) 중 2명 이상

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요령 제11조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회는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를 1/3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요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바) 전담기관의 장은 재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 전담기관의 장은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아) 전담기관의 장은 중·대형과제를 평가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전문위원회

1) 기능

장관은 요령 제44조의 제재 및 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2) 구성 및 운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평가단 위원,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나) 심의 대상

- ①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 ②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 ③ 수행기간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특별평가 사항의 경우
- ④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 ⑤ 기타 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다)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기 나) 사항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에 적합한 전문가를 보강하여 심의할 수 있다.

마)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여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령 제8조에 따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운영방법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하 “장비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사. 장비심의위원회

- 1)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2) 기능
 - 가)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심의
 - 나) 유휴·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 다)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3)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아. 운영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 해당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자. 전담기관

- 1) 전담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장관은 이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며, 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때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한다.
- 3) 전담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 현황, 실적, 성과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감을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차. 장비전문기관

- 1) 장비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장비요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장관은 신규사업을 공고할 때에는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심사, 구매, 정보등록 등에 대하여는 장비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사실과 장비전문기관명(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명시한다.

카. 주관기관

- 1) 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기관 및 단체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2) 기능(권한과 책임)
 - 가) 주관기관은 요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나)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과제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있다.



- ① 운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외부기관 소속 산학연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장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장비와 관련된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주관기관의 유형

주관기관의 유형은 과제의 수행형태에 따라서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타. 참여기관

- 1) 참여기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의한 기관 및 단체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2) 참여기관은 요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3) 기반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할 수 있다.

파. 결과활용기관

- 1) 결과활용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과제의 결과 및 성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하며, 필요시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 2) 결과활용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 과제 결과물에 대하여 계약행위와 동시에 비배타적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결과활용기관이 과제의 수행결과 발생한 결과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1)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는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는 참여기관의 사업 내용에 한하여 총괄책임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3) 총괄책임자의 다른 유형

가) 총괄주관책임자

① 자격

㉠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조정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

② 기능(권한과 책임)

㉠ 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

㉡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 종합적인 과제의 조정 및 감독 등

나) 세부주관책임자

①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은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기능(권한과 책임)

㉠ 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

㉡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주관책임자에게 보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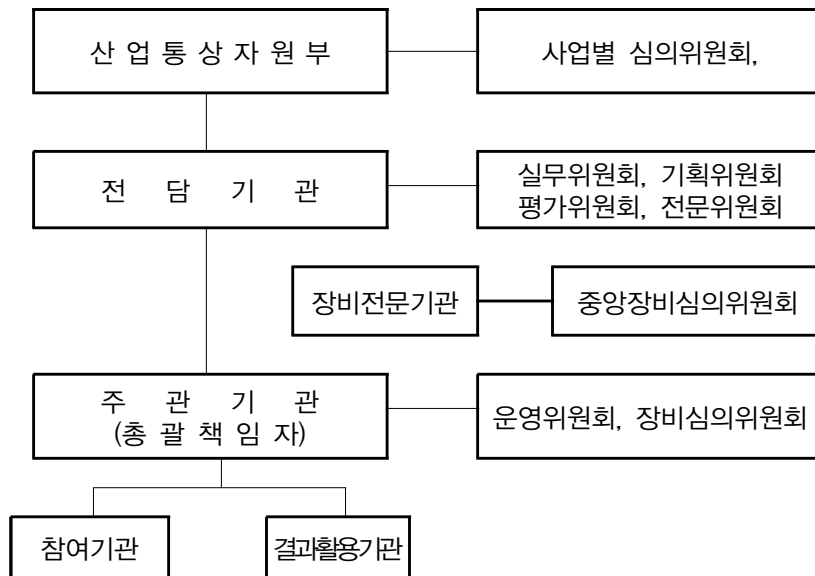


6. 추진 체계 및 절차

가. 개요

- 1) 매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
- 2) 과제수행자 공개모집(또는 지정), 사업계획심의, 사업자선정 절차를 거쳐 기반조성사업 주관기관 확정
- 3)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과제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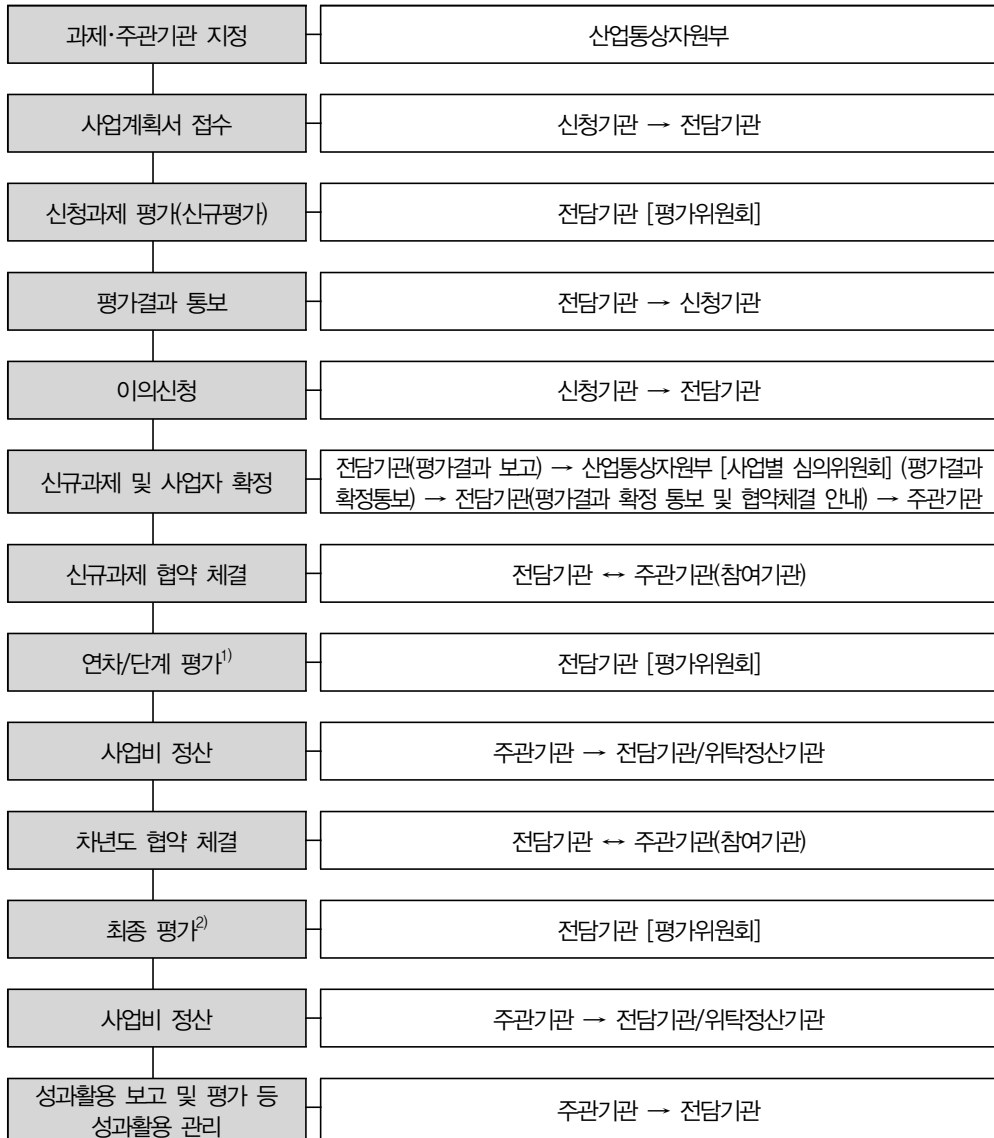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절차

①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②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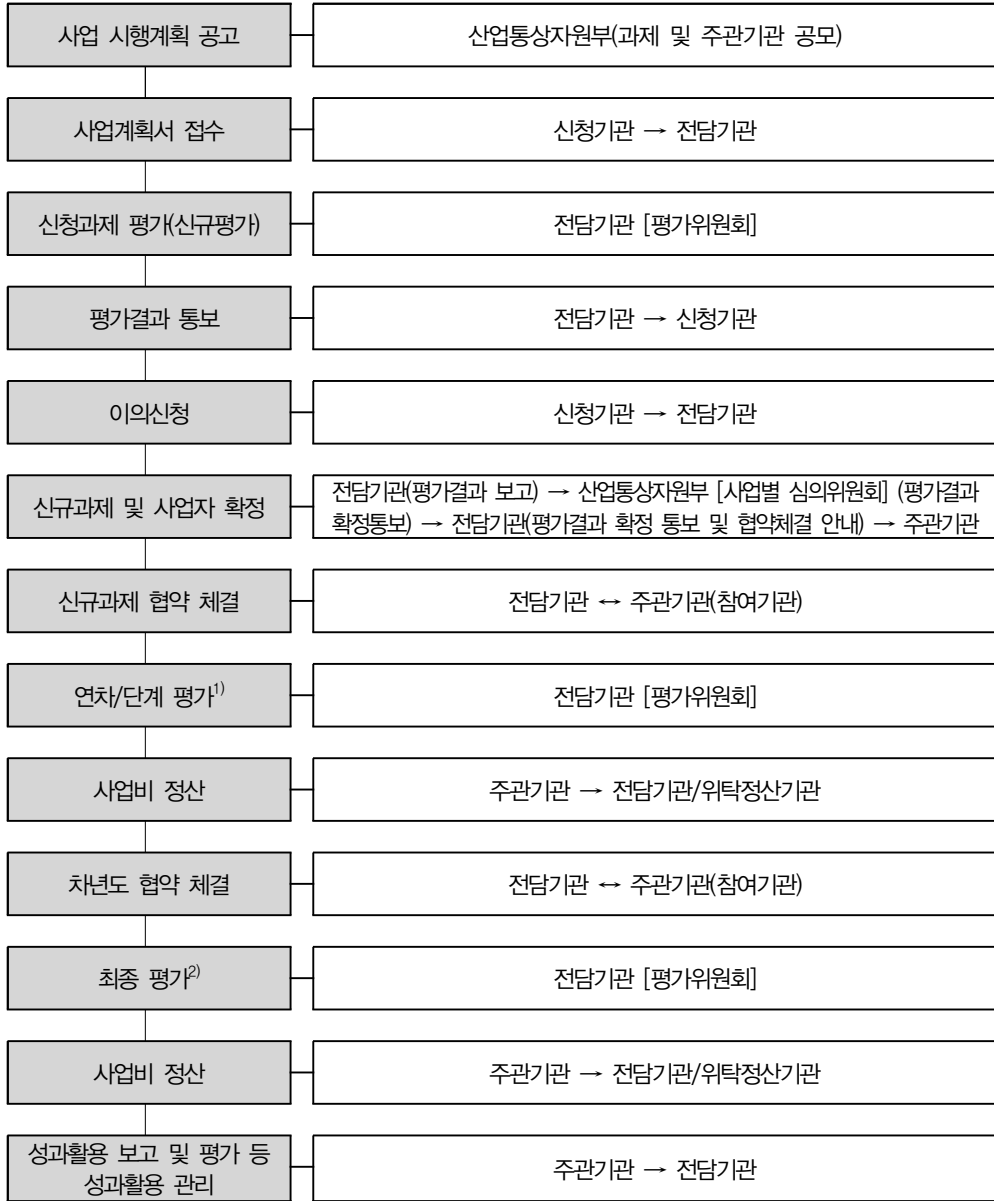
연구기획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사업평가 및 관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 ¹⁾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²⁾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③ 자유공모(일반형) 사업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④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7. 지원대상 과제의 발굴

가. 수요조사

1) 수요조사계획의 수립 및 공고

가)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요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① 조사목적, 대상사업 등 조사범위에 관한 사항
- ② 조사기간, 접수처, 문의처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③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수요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① 기반조성의 구축목표 및 내용
- ② 기반조성과 관련된 기술의 시장동향
- ③ 기반조성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
- ④ 기반조성완료 후 예상되는 산·학·연의 활용정도 및 파급효과

2) 수요조사 제안서의 평가

가)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조사 제안서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평가기준

- ① 평가위원회는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평가하며, 제안된 과제 중 중복이거나 유사한 과제는 통합·조정한다.
 - ㉠ 사업 취지의 부합 여부
 - ㉡ 기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과의 중복성



- ③ 과제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 다)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장관은 발굴된 연구기획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획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기획과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연구기획

1) 연구기획의 수행

- 가)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제목표 및 내용,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과제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기획을 수행할 수 있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기획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에 연구기획을 공모할 수 있다.
- 다)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기획의 실시, 절차, 평가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기획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제안요구서(RFP) 등 연구기획 결과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 가)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제별 연구기획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장관이 사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확정할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평가기준
 - ① 평가위원회는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과제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과제별 연구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 지원대상 분야 발굴

1)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 발굴

가) 전담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상시적으로 기반조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획을 실시하여 미래 잠재 수요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다) PD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에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는 주무과에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마)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는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투자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분야를 정한다.

2) 중장기 전략 마련

가)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1).-마)의 지원대상 분야 기타 민간 및 정부 수요 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수요조사 또는 연구기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별 특성에 따른 별도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가.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 정책지정 사업

- 가) 장관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행과제 및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장관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 대한 신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 나)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서 차기년도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예산 확정시 정책지정사업으로 추진한다. 단, 동 위원회가 정한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지정공모 사업

- 가) 장관은 연구기획을 실시하여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된 경우, 요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나)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연구기획 결과로 확정된 신규 지원대상 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유공모 사업

- 가) 장관은 자유공모(일반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기술혁신주체들로부터 자유롭게 과제를 접수받아 이중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나) 장관은 기반조성 신규 지원대상 분야를 정하여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다)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요령 제19조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 1) 장관은 요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산업기술R&D 종합정보 시스템 등)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장관은 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밖에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을 제시한다.
- 3) 장관은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해당 절차 및 일정을 공고한다.
- 4) 장관은 사업 특성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추천형식으로 신청기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방법, 추천자 및 피추천자 자격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5) 장관은 요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1) 신청자격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2)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에게는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신청기관은 사업 시행계획공고 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서 접수

- 1) 신청기관은 8.-나에 따라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전담기관에 사업계획서 또는 예비사업계획서(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등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가) 인터넷 접수절차가 필수임에도 인터넷 접수 없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나) 인터넷 접수는 되었으나, 접수마감 시한을 초과하여 신청서류가 도착한 경우



- 다) 전담기관의 장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라) 참여제한 중에 있는 기관 또는 관련자가 신청한 경우
- 마) 기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

마.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1) 총수행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2) 정부출연금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3) 협약은 총수행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하는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단계협약 또는 일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9. 기술료율

- 가.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과제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기술료 징수 여부, 징수 방식 및 기술료율에 대해서는 기술료 통합요령을 적용하되, 상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에 함께 공고한다.

10. 신규평가

가. 사전검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전검토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검토

- 가)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또는 예비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제출서류 외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2)-다), 라)의 ‘사전 지원제외’ 규정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④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신규 지원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종합정보시스템(<http://www.ntis.go.kr>)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신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③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또는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전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과제 참여율 제한

- ①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②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원은 참여연구원에서 제외된다.
- ③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 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 ④ 요령 제20조1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기타 참여율과 관련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 요령”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른다.

3) 우대 및 감점 기준 반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나)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의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 가)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면담 또는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신규 평가계획 수립

-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8.-가.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한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신규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예비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다. 신청과제 평가

-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전자평가 포함)”,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편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세부방법은 전담기관이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맞추어 반영하도록 한다.
 - 가)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1박 2일 이상의 합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나) 평가위원회는 기술분류가 가능한 경우 기술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다)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
 - 가)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서(또는 예비사업계획서), 현장실태(면담)조사 검토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에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할 수 있다.
- 다)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우대 및 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산출한다.
- 라) 평가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별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한다.
- 마)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과제 중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지원 1순위(선정과제)”, “지원 2순위(후보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 바)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가)부터 마)를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 1) 장관은 신규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우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기준 및 적용여부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나) 기 구축된 장비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기 보유한 장비를 대상으로 기관 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기반조성 과제인 경우
 - 다) 신규과제와 연계하여 장비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 라)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마) 대학의 경우 총 인건비에서 전담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경우. 이 경우 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바)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2) 장관은 신규평가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감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여부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가) 연차 및 단계,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 라)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마.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보고

-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을 확정통보하거나 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재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평가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여 재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 4)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5) 전담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예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장관은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보고에 대해 요령 제5조에 따라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심의·조정한다. 다만,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 1)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사업자(수행기관)을 확정한다.
- 2)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사업자(수행기관) 확정 결과를 통보한다.
- 3) 장관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상세기획 대상과제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아. 사업자 확정 결과 통보

- 1)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자(수행기관) 확정 결과,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 및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 2)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자(수행기관) 확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상세기획 대상과제 확정 결과, 상세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통보한다.
- 4)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보고·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에 있어 상기 마.부터 사.에 해당하는 절차를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상세기획 및 본평가

- 1) 전담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예비평가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분석, 과제목표 및 내용,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과제추진 방향 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상세기획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2) 신청기관의 장은 상세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다음의 4개 사업 유형 중 1개의 주된 사업 유형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된 유형을 선택한 후 부가 유형을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반조성사업 유형화 체계〉

유형	특징
시험분석기반 (테스트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시험 성적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사생산기반 (파일럿형)	구축된 기반을 양산 전 소량 규모의 시제품, 금형 또는 특정 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기술서비스기반 (서비스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응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연계확산기반 (네트워크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 3) 전담기관의 장은 상세계획의 실시, 절차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세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4) 신청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획보고서(사업계획서 포함) 등 상세계획 결과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전담기관의 장은 상세계획이 완료된 후 본평가를 실시하며,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을 위한 사전검토, 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보고·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 등에 있어 상기 가.부터 아.에 해당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 6) 전담기관의 장은 본평가 후에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11. 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2. 협약

가. 협약당사자

- 1) 협약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장관은 해외기관이 수행기관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협약체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부속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속기관의 장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협약할 경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협력계약)제2항에 따라 위임장을 생략하고 전담기관의 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협약할 수 있다.
- 3) 장관은 정책지정과제의 관리, 출연금 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협약의 체결

1) 협약 준비

- 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수행기관)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기간 내에 또는 협약 전에 변경요청이 있는 때의 검토기간은 협약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 나)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등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인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 부담 현금을 입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납입 협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출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할 수 있다.
- 라) 민간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현금은 협약 전에 주관기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과제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관기관 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입금 예정일 등이 명시된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마) 사업계획서 수정
- 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 가)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1차년도 협약시에는 협약관련 서류와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한다.

〈협약체결시 제출서류목록〉

번호	서류명	작성 방법
협약 관련 서	1	협약서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참여기관간 체결
	2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제출 전 담당연구원의 확인 필요
	3	위임장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시 제출



번호	서류명	작성 방법
류	4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계약서 - 참여기관이 전담기관과 직접 협약하지 않는 경우 제출토록 하며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원본을 보관
	5	현물출자확인서 - 현물출자 과제에 한함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국내기관에 한함 - 전자협약시 제출생략
	7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기관별 참여인력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과제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 가능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업 또는 과제에 한함 - 위치관련서류, 공지사항 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9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결과활용기관은 모두 제출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	10	사업비 청구서 -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출연금 요청시 제출
	11	사업비 관리 통장사본 등 - 수행기관 명의로 반드시 보통예금(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통장을 의미함)으로 신규 개설해야 하며(원본 대조필 필요),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인서” 추가 제출
	12	인감증명서 (협약당사자) -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 대학의 경우 직인사실증명원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전자협약시 제출생략
	13	연구비 카드제 관련 서류 -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제계좌통장 사본 등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나)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 및 일괄 협약 과제 중 계속과제는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모든 협약 서류를 확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 라)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협약 체결을 완료하면 협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요령 제26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협약기간

가)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사업자(수행기관) 확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체결일의 1일부터 기산하도록 한다.

나)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기간 시작일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사업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담기관이 요령 제27조에 따라 과제수행기간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월수만큼 협약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협약 전 과제의 조기 착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조기 착수시점부터 협약기간을 기산할 수 있다.

다. 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연차별 정산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 사업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로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변경 절차 및 기준

가)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변경 및 최종 목표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주관기관의 변경
- ② 최종 목표의 변경



- ③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 ④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 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및 연구시설로 변경
 - ⑥ 과제수행기간 변경
 - ⑦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⑧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⑩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⑪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 ⑫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에 한해 가능하되, 간접비 총액이 직접비 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⑬ 연차별 연구과제추진비의 증액(연구과제추진비 총액이 직접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 과제수행기간 변경 중 연차별 수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요령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참여 연구원(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 수행기관은 제외),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전담기관의 경우 전산 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 바)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관명, 총괄책임자, 소재지, 연락처 및 전용공간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에서 2)의 변경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장비 도입심의요청을 한 후에 도입내역의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에 도입내역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변경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최초 장비도입심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 아)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 및 단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협약 전·후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인수합병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자)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차)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연구원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를 수행중인 모든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카)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지원 비율을 적용한다.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제출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가입 필수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참여기관 동의서 * 제출 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주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 가입 및 사업체정보 입력필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견적서 및 카타로그 포함) ○ 장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공문(3천만원 이상의 장비 및 시설)
과제 수행기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간접비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증액 또는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구과제추진비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5)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3) 변경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할 수 있다. 이때, 협약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정을 받아야 한다.

라.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확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 가)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 나)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다)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라)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마)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10.-가.-2)신청자격 검토” 중 다), 라)의 경우, 계속 협약 대상 과제가 “10.-가.-2)신청자격 검토” 중 다)의 경우
- 바) 해당과제 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1)-나)부터 바)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1)-가)부터 바)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마. 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과제의 연차·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장관은 1)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출연금 지급

- 가.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하여 또는 집행시점마다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에게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 및 해당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4.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15. 진도점검

- 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점검을 할 수 있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다. 전담기관의 장은 성공적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라.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과제의 진도점검시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요령 제7조(평가위원회 등)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6.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가. 연차평가

- 1)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연차협약의 경우) 10부를 해당 사업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연차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2)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연차협약의 경우)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4) 수행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시 사업비 사용내역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또한 장비활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요령 제32조제7항의 연구노트를 장비사용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 5) 연차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확인한다.
 - 가) 과제추진현황 :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과제결과의 질적 수준, 과제의 활용실적
 - 나) 과제성과 : 결과활용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지원사례 등 과제의 연계효과 및 경제적 성과
 - 다)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별도계정과 별도통장 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작성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비목별 사용의 적정성,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기반조성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의 확인 및 적정성 등
 - 라) 당해연도 과제수행내용, 사업비 등의 변경승인에 따른 당초 목표달성 여부와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 6)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 평가(발표평가 및 토론평가 포함)·서면평가·1박2일 합숙평가 등을 실시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7)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차년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은 동 지침 10-가-2)를 적용한다.
- 8)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해 장관에게 우선 보고한다.



〈평가결과의 구분〉

계속	종합평점 60점 이상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기종료	종합평점 60점 이상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 (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중단 (불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 9)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 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0)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 가)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하는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1)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한 후,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12)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13) 장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8)의 연차평가 결과 또는, 12)의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는 동 지침 10. 신규평가를 준용한다.
- 14)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15) 전담기관의 장은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 사업년도 출연금의 10% 이내의 금액을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16) “불성실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전문위원회는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17) 상기 8)에 의해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첨부는 1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 나) 총괄책임자는 최종보고서 요약서 1부 및 최종보고서 전체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에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기술료에 대한 징수, 사용 및 관리는 기술료 통합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 18) 평가결과에 따른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수정 및 연차협약 절차 등은 동 지침 12.가.를 준용한다.

나. 단계평가

- 1)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단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 단계보고서, 다음단계 과제기획보고서, 다음 단계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단계 과제 내용 및 세부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는 다음 단계 과제기획 결과에 대하여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 단계 수행과제를 선정한다.
- 2)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4) 수행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시 사업비 사용내역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또한 장비활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요령 제32조제7항의 연구노트를 장비사용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 5) 단계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확인한다.
 - 가) 과제추진현황 :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과제결과의 질적 수준, 과제의 활용실적
 - 나) 과제성과 : 결과활용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지원사례 등 과제의 연계효과 및 경제적 성과
 - 다)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별도계정과 별도통장 관리 및



-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작성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비목별 사용의 적정성,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기반조성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의 확인 및 적정성 등
- 라) 당해연도 과제수행내용, 사업비 등의 변경승인에 따른 당초 목표달성 여부와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 6)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 평가(발표평가 및 토론평가 포함)·서면평가·1박2일 합숙평가 등을 실시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7)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검토함에 있어서 다음 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 자격은 동 지침 10.-가.-2)를 적용한다.
- 8)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해 장관에게 우선 보고한다.

〈평가결과의 구분〉

계속	종합평점 60점 이상
	단계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기종료	종합평점 60점 이상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 (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중단 (불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과제의 해당단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 9)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0)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 가)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하는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1) 평가위원회를 통한 단계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한 후,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12)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13) 장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8)의 단계평가 결과 또는, 12)의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는 동 지침 10. 신규평가를 준용한다.
- 14)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다음단계 사업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15) 전담기관의 장은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의 10% 이내의 금액을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16) “불성실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는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17) 상기 6)에 의해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는 동 지침 16.-가.에 따라 처리한다.
- 18) 평가결과에 따른 다음단계 사업계획서의 수정 및 단계협약 절차 등은 동 지침 12.나.를 준용한다.

17. 최종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사업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성과활용계획서 포함)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나. 최종평가 실시

- 1)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결과활용실적의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확인한다.
 - 가) 과제추진현황 :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과제결과의 질적 수준, 과제의 활용실적
 - 나) 과제성과 :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지원사례 등 과제의 연계효과 및 경제적 성과



- 다)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별도계정과 별도통장 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작성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비목별 사용의 적정성,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기반조성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의 확인 및 적정성 등
 - 라) 성과활용계획 및 자립화 방안 : 성과활용기간의 운영방향, 수익금 현황 및 사용계획, 동 사업의 파급효과, 해당산업 및 지역산업의 기여도 등
 - 마) 당해과제의 과제 수행내용, 사업비 등의 변경승인에 따른 당초 목표달성 여부와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 4)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5)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결과의 구분〉

혁신성과	종합평점 90점 이상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높은 경우 등
보통	종합평점 60점 이상 90점 미만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낮은 경우 등
불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경우,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 6)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 7)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평가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한 후,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8)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 9)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는 동 지침 10. 신규평가를 준용한다.
- 10)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11)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된 과제는 동 지침 26.-다.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12)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는 “불성실수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13) 평가위원회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경우, “성과활용 면제대상”으로 분류하고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성과활용 면제대상”으로 분류된 경우는 심의 결과 종합의견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유는 지침 22.-가.에 따른다.

18.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기반조성과제에 소요된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19.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가. 수익금의 관리

- 1) 주관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중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 집행을 제외한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익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수익금의 사용

- 1) 주관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총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가) 총수행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직접비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년도 수익금은 차년도부터 투자).
 - 나)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년도 집행비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다. 수익금 사용현황 보고 등

- 1) 주관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년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담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수익금 사용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목적외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요령 제44조 및 장비요령 제51조에 따라 처리한다.

20.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 가.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는 연차·단계 또는 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보통”),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말한다.
- 나.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공고된 과제에 대해 징수한다. 전체 과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하여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 다. 기술료 관련 규정 중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료 통합요령을 따른다. 이때, 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은 기술료 통합요령 제33조에 따라 국내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21. 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 가.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유지 및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결과를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과제수행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령 제44조 11항에 따라 사업의 중단(성실), 성실 수행 및 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2. 성과활용의 보고

가.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 및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 결과 통보년도부터 성과활용기간 동안 매년 1월말까지 제출(온라인 또는 서면)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익년 1월 말일까지 1년차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제출하며, 총 5회에 걸쳐 연차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 1) 최종평가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의 경우
- 2) 장관이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 또는 과제로서 성과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성과활용기간내 요령 제44조에 따라 문제과제로 판정되어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받는 경우
- 4) 과제의 특성상 과제수행 중에 당초 정부지원의 목적을 완료하였으나, 후속적으로 성과활용이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23.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가. 문제과제의 처리

-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배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실태조사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시는 다음 나.에 따라 처리한다.
- 2) 상기 1)에 의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는 연차평가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등의 처리 시 참조할 수 있다.

나. 제재등급 및 대상

- 1)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 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장관이 확정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요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4)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력할 수 있다.
- 5)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상기 2)의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6)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다. 참여제한

- 1)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 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3)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를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출연금 환수

- 1) 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 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 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집행시점 건별로 출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민간부담 현금 지분의 잔액을 제외한 출연금 지분의 잔액을 우선 환수조치하여야 하며, 수행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다음과 같이 환수할 출연금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실태조사(또는 재산조사) 또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가)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 나)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의 경우
- 4)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5)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 통합요령 제9조 및 사업비 요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세부기준에 따라 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납부기한은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마. 행정행위 등

- 1) 중단,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4 연구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장비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다음의 표와 같다.

〈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 이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산업통상자원부		

25. 연계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계운영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가. 목적

연계운영의 목적은 기반조성사업 및 기타 유관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 촉진을 통한 투입 자원의 성과 극대화에 있다.

나. 구성 및 운영

- 1)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계운영기관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는 구성과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가) 전담기관의 장은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연계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운영기관과 기반조성사업수행주체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연계운영의 추진주체인 연계운영기관은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구성하며, 연계운영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가) 기술인력, 과제정보 및 장비 등에 대한 DB구축 등을 통한 인력교류, 정보교류, 연구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
 - 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촉진하는 활동, 사업추진과정의 애로사항 조사 및 해결방안 강구 등
 - 다) 기반조성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연계한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 유도,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확산 등
- 4) 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결과보고

- 1)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활동계획과 비용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 활동결과와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리하여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기타사항

가. 보안 및 비밀 준수

- 1)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안관리요령」을 따른다.



-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연구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 1) 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연구원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연구원 등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다. 사업홍보

- 1)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 시 지원하는 지원기관(산업통상자원부)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사업수행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3) 우수연구자 포상
 - 가) “혁신성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에게 우대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나)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 기반조성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장관은 요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후속 과제 지원 등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라. 표준서식

장관은 동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협약·평가·보고 등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바. 기타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관과 전담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2. 12. 26.]

1.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3. 8. 1.]

1. 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단, 4.-나.-2)에 정의한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 개정시부터 적용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4. 5. 1.]

1. 이 지침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V.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 **공통운영요령 제32조에 따라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의무화**
 - 수행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실태조사 시 전담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참조 사이트 : 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http://www.e-note.or.kr>)

- **연구노트의 종류**
 - 서면연구노트
 -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 전자연구노트
 - 전자문서의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자동기록 기능
 - 입력된 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요령**
 - 수행기관이 서면연구노트와 전자연구노트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작성·관리
 - 수행기관별 각 1부씩 작성·관리(참여연구원별 각 1부씩이 아님)
 - (서면연구노트)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본된 형태의 책자로 작성·관리
 - (전자연구노트)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그램 사용(한글, 엑셀 사용불가, 프로그램 사용비용은 연구비로 집행 가능하나, 시스템 구축은 불인정)
 - 수행과제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해당 기술·업종에서 통용되는 방식(예:TM (Technical Memo), TD(Technical Document) 등) 형태로 작성·관리 가능

VI. 법 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목 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산업기술혁신계획
- 제6조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 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 제8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 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 제11조의3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 제13조의2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 제14조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 제15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 제15조의2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 제16조 신제품의 인증

- 제16조의2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제16조의3 인증표시
- 제16조의4 인증의 사후관리
- 제16조의5 인증의 취소
- 제17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제17조의2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제20조의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제20조의3 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 제21조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제22조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 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 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 제25조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 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 제26조의2 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 제27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 제28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 제29조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 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 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 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 제34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 제34조의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 제35조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 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 제37조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제37조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기금의 설치
- 제37조의3 기금의 계정 구분
- 제37조의4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37조의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37조의6 차입금
- 제37조의7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37조의8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 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 제39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 제39조의2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 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제43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제8장 보칙 및 벌칙

- 제43조의2 수수료
- 제44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6조 비밀유지
- 제47조 벌칙
- 제48조 양벌규정
- 제49조 과태료

부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58호, 2014.12.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0.1.13., 2013.7.30., 2014.12.23.>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 7.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 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 [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 9. “사업화”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술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24.>

[전문개정 2009.1.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 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혁신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7의2.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단장과 투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기술사·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⑥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5.24.]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자원의 확충) ①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③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 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8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9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1.5.24., 2013.3.23., 2013.8.6.>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2013.3.23.>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2.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漏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6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 ⑤ 삭제 <2014.5.20.>
 - ⑥ 삭제 <2014.5.20.>
 - ⑦ 삭제 <2014.5.20.>
- [본조신설 2009.1.30.]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0.]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②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을 관리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담기관



- 2.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게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30.]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① 정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과로 얻어지는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보안 체계가 우수한 기술혁신주체에 대하여 산업기술 혁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력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1.5.24., 2014.5.20.>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1.5.24.]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확인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6조의2(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16조의3(인증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5.24.]

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16조의5(인증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2.1.26., 2013.3.23.>

③ 삭제 <2012.1.26.>

④ 삭제 <2012.1.26.>

⑤ 삭제 <2012.1.26.>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1.5.24.]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신제품 구매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⑨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본조신설 2012.1.26.]

제18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제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30.]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3.]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③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기술개발과제정보·기술이전정보·특허정보·디자인정보·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3. 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4.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무역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디자인·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振作)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2.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 2의2. 산업기술의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과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1.30.]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3.]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개정 2009.1.30.>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③ 삭제 <2011.5.24.>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국의 정부·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국내 기술 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자금·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1.30.]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개정 2009.1.30.>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용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9.1.30.]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지도(이하 “기술진단·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 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대상·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35조(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



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분석 등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신설 2014.12.23.>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37조의3(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기술료
2. 정부의 출연금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산업기술혁신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제37조의6에 따른 차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② 산업기술혁신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협력사업의 지원
 2.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4. 산업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6.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 한다)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의 전출
 7.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출연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징수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의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
 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의 출연
 9.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10. 일반회계에의 전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본조신설 2014.12.23.]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②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2014.12.23.]

제37조의6(차입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37조의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6.>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1.5.24.>

② 평가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평가관리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평가관리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30.]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①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산업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 공학·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③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5.20.>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전문개정 2009.1.30.]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①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본조신설 2011.5.24.]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1.5.24.]

제46조(비밀유지)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
2.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1.30.]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3제2항(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5.20.]



부 칙 <제12858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기금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수 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②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제24조 각 호”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의6(가산금)

제14조의7(독촉)

제15조(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제16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절차)

제18조의2(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제18조의3(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제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제19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20조의2(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20조의3(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제25조(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제26조 삭제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제27조의2(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 제29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 제34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 제35조(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제37조(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 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 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 제44조(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대상·절차·기간 등)
- 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44조의4(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제44조의5(기금의 회계연도 등)
- 제44조의6(기금의 관리·운용 규정)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 제45조(원장)
- 제46조(사업연도)
-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 제52조 삭제
-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 제56조(윤리경영기관 등)

제7장 보칙

-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9조(규제의 재검토)
-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21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3조 삭제 <2009.4.30.>

제4조 삭제 <2009.4.30.>

제5조 삭제 <2009.4.30.>

제6조 삭제 <2009.4.30.>

제7조 삭제 <2009.4.30.>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 [전문개정 2009.4.30.]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및 수행 능력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4.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5.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과의 중복 여부
6.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및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
3.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중간 성과에 대한 평가
4.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9.4.30.]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자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9.4.30.]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8., 2011.6.24., 2012.6.5., 2013.3.23.>

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
3.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1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전문개정 2009.4.30.]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 기간
- 2.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3.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사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3의2.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4.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 7.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활용·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8.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9.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30.]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1.23.>
- [전문개정 2009.4.30.]
[제목개정 2011.11.23.]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진흥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09.4.30.]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09.4.30.]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2.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2년(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5년)
3.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3년
4.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2년 이내
5.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의 경우: 5년 이내
6.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의 경우: 3년 이내
7.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1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4.30.]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8.6.>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8.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1.11.23.]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8.6.]

제14조의7(독촉)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본조신설 2014.8.6.]



제15조(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①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4.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전문개정 2009.4.30.]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5.>

1.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제품(試製品), 연구장비, 시설 등 유형적 성과

2.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

②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5.>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기술혁신성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경우로서 기술료를 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

4. 기술혁신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5.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용(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2.6.5.>
-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 성과물”이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2.6.5.>
 -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연구장비
- ⑤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5.>
[전문개정 2009.4.30.]

제16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식재산권의 번호, 제목 및 내용
 - 2. 사용 목적
 - 3. 지식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계획
-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구용역계약 또는 협약의 내용
 - 2. 연구장비·설비 및 시작품 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
 - 3. 사용 목적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장비·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줄 때에는 넘겨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장비·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장비·설비 및 시작품 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30.]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시설·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기술 및 홍보 지원
5.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6.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

② 제1항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목개정 2011.11.23.]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인증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1. 기술명
2. 기관명 및 대표자
3. 인증예정기간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목개정 2011.11.23.]

제18조의2(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1.23.]

제18조의3(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 1.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⑦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1.23.]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2.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같거나 우수할 것
- ③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1.23.]

제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인증 심사”는 “신제품 인증심사”로 본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19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3.>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발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③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30.]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1.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제품일 것
 2.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을 것
-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11.23.>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 ③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⑥ 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23.>

⑦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20조의2(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20조의3(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 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9.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10.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제22조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3.]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4.30.]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5., 2013.3.23.>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6.5., 2013.3.23.>

[전문개정 2011.11.23.]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11.23.>]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접수



4.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보
5.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5.]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2.6.5.>]

제25조(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인증신제품의 목록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2.6.5., 2013.3.2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인증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제목개정 2012.6.5.]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12.6.5.>]



제26조 삭제 <2009.4.30.>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6.5.>

1.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가. 인증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

나.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

2.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가. 전년도 구매계획에 따른 구매실적

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개정 2012.6.5.,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5.,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27조의2(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명 및 대표자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일

4. 그 밖에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6.5.]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14.11.19.>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29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인증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인증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 [전문개정 2009.4.30.]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전문개정 2009.4.30.]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 기술진흥원
4. 평가관리원
5. 세라믹기술원
6. 시험원
7.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4.30.]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제13조·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전문개정 2009.4.30.]

[제목개정 2011.11.23.]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운영
3.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취업 지원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있을 것



2. 산업현장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일 것

[본조신설 2014.12.30.]

제34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4.12.3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단가 이상의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 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전문개정 2009.4.30.]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가. 국공립연구기관
 - 나.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11.11.23.]

제35조(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 등은 지원받은 연구장비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측정표준의 확립 및 국가교정(國家校正)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법정계량제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37조(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디자인·브랜드에 관한 조사·연구
2. 디자인·브랜드에 관한 기술·기능의 보급
3. 디자인·브랜드에 관한 권리 보호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일반국민에 대한 산업기술 교육의 활성화
2.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산업기술동향의 홍보



3. 산업기술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4.30.]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제기술협력 전략의 수립
2.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
3. 국제기술협력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4.30.]

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① 국제산업기술협력 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본조신설 2009.4.30.]

[제목개정 2011.11.23.]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북한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2.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수요 조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4.30.]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해외 우수기술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 해외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험·검사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2. 소속 기술진단·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3. 기술진단·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

[전문개정 2009.4.30.]

제44조(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대상·절차·기간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이하 “연구인력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2.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② 연구인력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7.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 ③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 ② 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
 2. 법 제3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기획·관리 및 평가사업
 3. 산업기술의 진흥과 산업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진흥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12.30.]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자료 및 기술 수요의 조사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사업
2. 대체물질의 이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12.30.]

제44조의4(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기금의 회계업무
2.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44조의5(기금의 회계연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술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44조의6(기금의 관리·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5조(원장) ①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②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각각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46조(사업연도)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30.]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2. 평가관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3. 세라믹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4. 시험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여부
- ③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때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해당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전문개정 2009.4.30.]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①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 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대학·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30.]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30.]

제52조 삭제 <2009.4.30.>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

[전문개정 2009.4.30.]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정관·사업계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디자인·브랜드·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3. 연구장비·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09.4.30.]

제56조(윤리경영기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주관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7장 보칙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13.12.11.>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후관리
4.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의 인정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7.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의 권고
8.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결과 통보의 접수
9.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권한
11. 제20조의2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12.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13.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추가 목록의 통보
14.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 지원요청의 접수
15.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의 요청
16.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매 여부 등의 통보의 접수
17.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통보
18.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1.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심사
4. 제2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20조제5항에 따른 사전통지에 관한 사무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신제품인증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5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본조신설 2014.8.6.]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4.8.6.]

부 칙 <제25921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회에”를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로 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목 차

제1조(목적)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제1조의2(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1조의3(전략기획단의 구성·운영)	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제1조의4(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제1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제11조(수수료)
제2조의2(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2조의3(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부칙
제2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제2조의6(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3조(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4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5조(이의신청)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제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3(행정처분기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제1조의2(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
2.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제1조의3(전략기획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투자관리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단장은 전략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담기관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기획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제1조의4(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재부가금의 부과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재부가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각 1명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나.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다.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8.6.]

제1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6.]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14.8.6.>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1.11.25.>

③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11.25.>

[전문개정 2009.4.30.]

[제목개정 2011.11.25.]

제2조의2(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신기술 인증번호
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본조신설 2011.11.25.]

제2조의3(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2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기술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11.25.]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1.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마.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 바.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사.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 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본조신설 2011.11.25.]

제2조의6(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본조신설 2011.11.25.]

제3조(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5.]

제4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기술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의 재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제품 인증서의 재발급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5조(이의신청)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제품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5.]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5.]



제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제6조의3(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11.25.]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1. 국제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전문개정 2009.4.30.]

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법 제36조제2항에서 “기술조사·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동향 및 기술개발 수요에 관한 조사·분석
2.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조사·분석
3. 중·장기 산업기술계획의 수립
4. 기술집약적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



2.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3. 기술평가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사업
4. 특허권의 신탁관리사업
5. 그 밖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4.30.]

제10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수준 및 전망에 관한 조사
2.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3.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조사
4.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과제의 기획·관리 및 평가
5. 그 밖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4.30.]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인증·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부 칙 <제108호, 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 제4조 사전조사 및 기획
 - 제5조 기술수요조사
 - 제6조 공고 및 신청
-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제7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제8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제3절 협약

- 제9조 협약의 체결
- 제10조 협약의 변경
- 제11조 협약의 해약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제1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 제12조의2 연구개발비의 사용
 - 제12조의3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 제13조 간접비산출위원회
- 제14조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 제15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 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 제17조 평가에 따른 조치
- 제18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 제19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 제20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제2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22조 기술료의 징수
- 제23조 기술료의 사용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 제2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 제24조의2 보안관리심의회
 - 제24조의3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 제24조의4 분류기준
 - 제24조의5 분류 절차
 - 제24조의6 보안등급 변경
 - 제24조의7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 제24조의8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 제24조의9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 제24조의10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 제25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제26조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27조의2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제27조의3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7조의4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장 보칙

제28조 전문기관의 업무

제29조 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제30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제32조 연구수행에의 전념

제33조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제33조의2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제33조의3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33조의4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제33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제33조의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세부 규정의 제정·운영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별표 1의2] 삭제 <2012.5.14>

[별표 1의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7조제10항 관련)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8항 관련)

[별표 2의3]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제23조제8항 단서 관련)

[별표 2의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2.5.14>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25조제22항 관련)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제27조제10항 관련)

[별표 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27조의3제1항 관련)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4.11.28.>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22., 2014.8.12., 2014.11.28.>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2013.3.23.>

⑦ 제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3.3.23., 2014.8.12., 2014.11.28.>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2.5.14.]

제5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9.26., 2014.11.2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참여 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 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8.12., 2014.11.28.>
-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



-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8.12., 2014.11.28.>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삭제 <2012.5.14.>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1.3.28., 2012.5.14.>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3절 협약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11.28.>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9.26., 2014.8.12.>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1의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2.5.14.>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2.22.>
- ⑥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대학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⑧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⑨ 삭제 <2012.5.14.>

⑩ 삭제 <2012.5.14.>

⑪ 삭제 <2012.5.14.>

⑫ 삭제 <2012.5.14.>

⑬ 삭제 <2012.5.14.>

⑭ 삭제 <2012.5.14.>

⑮ 삭제 <2012.5.14.>

<16> 삭제 <2012.5.14.>

<17> 삭제 <2012.5.14.>

<18> 삭제 <2012.5.14.>

[제목개정 2012.5.14.]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2., 2013.9.26.>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 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 ⑦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4.]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2.5.14.]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26.>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3.9.26., 2014.11.19.>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⑨ 위원장은 간접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⑪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1.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2.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3.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2014.11.28.>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3. 대학의 경우 제12조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시 최고 등급 부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5.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6. 삭제 <2012.5.14.>
7. 제29조제6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운영 실태 점검 면제



8.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연구관리 체계를 연 2회 이내에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 외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비의 횡령, 연구개발 내용의 국내외 누설 또는 유출 등 연구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대상·기준·절차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2014.11.28.>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개정 2014.11.28.>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4.8.12.>
-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제목개정 2014.11.28.]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 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목개정 2014.11.28.]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4.11.28.>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4.11.28.>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8.12., 2014.11.28.>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4.11.28.>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같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2.5.14.>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1.3.28., 2013.2.22.>

⑨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⑪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개정 2014.11.28.>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11.2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1.28.]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4.11.28.>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014.11.28.>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⑧ 연구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8.12., 2014.11.28.>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7.21., 2014.8.12., 2014.11.28.>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 ②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8.12.>
-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 ⑧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4.11.28.>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4.11.28.>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 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 ⑤ 삭제 <2012.5.14.>
- ⑥ 삭제 <2014.8.12.>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2014.8.12.>
- ⑧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2014.8.12., 2014.11.28.>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1.3.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24조의2(보안관리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2.>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1.28.>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I급비밀, II급비밀, III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I급비밀, 군사 II급비밀, 군사 III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 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24조의4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14.8.1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4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8(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24조의5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24조의6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본조신설 2011.3.28.]

[제목개정 2014.11.28.]

제24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 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 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정보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11.28.>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희·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14.>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연구장비 도입·운영·관리·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3.9.26.>

⑩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미래창조과학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11.28.>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리 계획

<16>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9.26.>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 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1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19>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 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 <20>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 <2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 <22>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28., 2014.11.28.>
- <23>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11.28.>
- <24>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11.28.>
- <2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유통 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4.11.28.>
- <26>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제3호의 정보를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 <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4.11.28.>



-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2013.3.23.>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되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3.9.26.>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3.9.26., 2014.8.12., 2014.11.19.>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1.3.28.>
-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4.11.28.>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9.2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13.9.26.>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11.28.>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7장 보칙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8.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1.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②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12., 2014.11.28.>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3.9.26.>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4.11.28.>

- 1. 연구 기획·관리·평가
- 2. 연구개발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
- 3. 연구윤리
- 4. 연구실 안전
- 5. 연구노트
- 6. 연구보안
-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 8. 연구개발비의 집행
-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8.12.>

-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 그 밖에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3(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사업에 대하여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26.]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 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⑧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본조신설 2013.2.22.]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13.2.22.>]

제33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4에서 이동 <2013.2.22.>]

제33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5. 제2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8.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12.]

제34조(세부 규정의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삭제 <2012.5.14.>
2. 삭제 <2012.5.14.>

제35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제27조의3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제재 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부 칙 <제25779호, 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 [별표 1의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7조제10항 관련)
-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8항 관련)
- [별표 2의3]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23조제8항 단서 관련)
- [별표 2의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12.5.14.>
-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25조제22항 관련)
-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0항 관련)
- [별표 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7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3.9.26>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제7조제10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4) 삭제 <2012.5.14>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3)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의3] <개정 2013.2.2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7조제10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마.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2. 감점 부여항목

-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별표 1의4] <개정 2014.8.12>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p>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p> <p>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p> <p>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p> <p>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p> <p>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p>	<p>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 금액의 15퍼센트 이상</p> <p>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 금액의 13퍼센트 이상</p> <p>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 금액의 10퍼센트 이상</p>	<p>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금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p> <p>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금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p>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4.8.1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 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 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p>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p> <p>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비 · 재료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 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 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 수집, 특허정보 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연구 과제 추진비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 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 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p>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로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p> <p>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 까지 집행할 수 있다.</p>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 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 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를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 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력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개정 2014.8.1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제19조제8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 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교: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 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2의3] <개정 2014.11.28.> [시행일 : 2015.1.1.]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제23조제8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2의4] <개정 2014.11.2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제24조의7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 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 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 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표 3] 삭제 <2012.5.14.>

[별표 4] <개정 2014.11.2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제25조제22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1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4.11.28.>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제27조제10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6] <신설 2014.11.2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27조의3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 나.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조작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다.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